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0205-10

[www.moe.go.kr](http://www.moe.go.kr)

#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5. 12.



## 제1장 유아교육

1. 임대유치원 학급 증설	3
2. 유치원 설립인·허가	4
3. 유치원 회계	4
4. 유치원 입학연령 기준	5
5. 전국 유치원 주소록	6
6.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관련	6
7.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우선순위 여부	7
8. 보육료 대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으로 해결가능	8
9. 유치원 설립 조건	9
10. 유치원 장학자료	10
11. 해외 취득 교사 자격증의 국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전환 가능	11
12.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12
13. CCTV 설치 등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12
14.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변경에 대하여	13
15.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누락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	13
16. e유치원시스템 회원가입 blocking	14
17.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정책(특례법) 규제 건의	14
18. 유치원,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구성 시 유치원 교원위원의 당연직 부여	15
19. 유치원비 신용카드결제 허용	16
2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17

## 제2장 특수교육

1. 특수교사 정원 확보 요청	21
2. 일선교육청의 특수교육 실무사 호징 변경 반대	22
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후 재취학 시 진급(졸업)에 대하여	24
4. 중학생 장애학생의 졸업 요건의 결석 일수에 대하여	24
5. 특수장애학교 수업방식에 대하여	25
6. 교외 현장실습 시 장애 대학생 도우미 활동 인정 방법	25
7. 장애아동 12세 미만 무상지원 혜택 여부	26

8. 특수교육보조원의 장애학생 방과 후 지원 선택 여부 ..... 27  
 9.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의견서 ..... 28

**제3장 초·중등교육**

1. 교사 타 시·도 전출 기준이 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 ..... 35  
 2. 교사 신규 임용시험 장애인 합격 미달시 일반 모집 전환 여부 ..... 35  
 3. 사립교원의 난임 휴직 가능 여부 ..... 36  
 4. 사립학교 교장의 잦은 전보가 가능한가요? ..... 36  
 5. 교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하여 ..... 37  
 6.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 ..... 37  
 7. 법제처 고등학교이하 설립 규정 중 인접이란? ..... 38  
 8. 중등학교에서 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 39  
 9. 순회교사제도 운영 ..... 40  
 10. 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신청 가능한지? ..... 40  
 11. 봄방학 기간 중 봉사활동 입력방법 개선 요구 ..... 41  
 12. 장기 학교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하여 ..... 42  
 13. 중학교 성적표 석차 미산출에 대하여 ..... 43  
 14. 학생 봉사활동 범위 개선 요구 ..... 44  
 15.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44  
 16.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해 건의 ..... 46  
 17. 친일행적 문인 작품 교과서 배제 요청 ..... 46  
 18. 특정인을 교과서에 기재 요청 ..... 47  
 19. 교과서를 재편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등재할 수 있는지 ..... 48  
 20. 검정, 인정 교과서 채택 현황 및 교과서 점유율 정보 ..... 48  
 21.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 요청 ..... 49  
 2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 49  
 2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청구기간 계산 ..... 50  
 2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해당없음”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여부 ..... 51  
 25. 해당학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 공개 가능 여부 ..... 51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의무사항인지 ..... 52

27.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처	52
28.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사항 이행	53
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제10조 제1항 관련) : 교육강사(보건교사 포함 필요)	53
30. 안전교육에 대한 법률 여부	54
31. 초등 구강검사를 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54
32. "메르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55
33.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자퇴일 변경 가능 여부	56
3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중위소득, 중복지급 등)	56
35. 교육비 심사기준에 대하여	57
36. 교육비 자사고 학생에게 지원 여부	58
37. 다문화 학생 학부모의 중학교 입학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59
3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60
39. 조교 공무원 상당계급 문제점	60
40. 학생 피해를 볼모로 하는 급식파업 반대	61
41. 2013.12.12. 직종개편에 의한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 호봉 재획정	61
42. 직급별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제의 관계	62
43. 시설관리 업무범위에 인쇄업무가 포함되는지?	63
44.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여부	64
45. 강임 전직자가 근속승진 후 일반승진할 때 근무평정점 반영	65
46. 사립학교 일반직 채용의 일반사기업 경력 산정에 대하여	66
4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가점평정	67
48. 국립학교 근무 경력 인정 여부	69
49. 학교운영을 위한 자문비용의 지출 : 교비회계	69
50. 명시이월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시기	70
51.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학교운영위원 경조사 경비 지급 가능 여부	70
5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령 해석 의뢰	71
53. 학교용지 부담금 1	72
54. 학교용지 부담금 2	73
5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법령검토 의뢰	74
56. 재개발지구 학교 용지 지정 후 매입 시기	75
57. 원문정보공개 의문	76

58. 교육부 청소년수련원 인·허가 ..... 77

59. 통학버스 운영비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 80

60.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 교육경비 지원 여부 ..... 81

61.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운영에 대하여 ..... 82

62.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미정에 대하여 ..... 83

63. 학교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재질문 ..... 83

64. 0000중학교 재정지원 중단 철회 요청 ..... 87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린이집 누리과정 안정화 확보 ..... 88

**제4장    고등교육**

1. 고교 선배정으로 전학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요청 ..... 91

2. 대학 입시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반영 ..... 92

3. 대입 수시 발표 지연으로 수능 원서 환불 불가능에 대한 의견 ..... 93

4. OO대학교 입시전형에서 제2외국어 미선택시 불합격 처리 ..... 94

5. OO대학교의 부당한 수시 추가합격과 위 학교의 태도 문제 ..... 94

6.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요청 ..... 95

7. 수시합격통보 후 등록동의 확인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처리 ..... 96

8. 수시합격 미 통보에 대한 의문점 ..... 97

9.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이후 예비합격자에게 기회 부여 요청 ..... 97

10. 2016학년 수능 개선 제안 ..... 98

11. 국립대학교 교수 개인행사 참가 가능 여부 ..... 99

12. 대학 조교 연가 일수에 대하여 문의 ..... 99

13.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과조교의 다음해 연가일수(1/2내)를 사용가능한지 ..... 100

14. 대학 교원의 교육경력 환산 문의 ..... 102

15. 일반대학원 연구조교(등록금 면제형태로서 보수 지급) 경력이 교육 공무원호봉에 반영 ..... 102

16. 사립대학교의 비전임교원 자격(연구교수) ..... 103

17.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적으로 징수에 대한 조치 ..... 105

18.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해당여부 ..... 105

19. OO의과학대 학과증설 가능 여부 ..... 106

20. 대학구분(종합대학, 단과대학 등) ..... 107

21. OO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에 속하는지? .....	108
22.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차이? .....	109
23. 당해 학교법인이사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	109
24.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국내 대학 학력인정 .....	110
25.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110
26. 대학설립기준(교지확보) .....	111
27. 종교학교 인·허가 .....	112
28. 교육부에서 대학교내 교직원 처벌규정 .....	112
29. OO대학교 시위와 총장비리에 대하여 .....	113
30. 대학재산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	114
31. 범죄수익 은닉재산 관련 복지부정 .....	114
32. 비전임 교원의 이사 취임 .....	115
33. 대학특성화사업 구매 .....	116
34.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으로 연구비 집행 .....	117
35. 산학 협력 EXPO의 허구성 .....	118
36. 도립(공립)대학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 .....	119
37. 연구비 부당집행 회수 및 연구비 인건비 책정 .....	119
38. 산업단 활동에 불참시 불이익 여부 .....	120
39. 링크사업 평가기간 동안 대학재원 입체 .....	120
40. 전문대학에 4년제 학과 개설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	121
41. 대학 특성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관한 기준 .....	122
42. OO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육부 특성화사업 지원금 .....	122
43.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1 .....	123
44.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2 .....	124
45. 일반학생이 계학학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가능 여부 .....	124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1인점포 ‘계약학과’ 입학자격부여 .....	125
47. 산업체 학교 지원시 사업자등록증 대신 배치 확인서 대체 여부 .....	126
48. 산학협력 입학 요건에 대하여 .....	127
49. 2015 계약학과 설치현황 .....	129
50. 대학내 도서관 관리감독 소홀 .....	129
51. 폴란드 야기엘로니아대학 <한국학과> 신설 지원 .....	130

52.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자산등록제 관련 개선 요청 ..... 131

53. 한국연구재단 KCI사업의 민간산업 중복 및 침해 ..... 132

54. 한국연구재단 토대 연구의 제38번에 저 대학교 명예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평가받을 수 있게 조치 요망 ..... 134

**제5장 교육정보**

1. 미세먼지 농도 관련하여 일정 수치에는 휴교령 내리는 것을 법규화 ..... 139

2. 학교 재난안전관련 훈련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 ..... 140

3. 재난유형별 매뉴얼 일반인 열람 가능한지? ..... 141

4.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보 방안 제도 ..... 141

5. 학교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처리절차 ..... 142

6. “안전제안” 초·중등 안전체험시간 생활기록부에 기재 ..... 142

7.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 143

8. 교육부,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표준안 제작 ..... 144

9.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요청 ..... 144

10. 민간인(기관)이 학교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방법 ..... 145

11. 사이버대학의 전과제도 ..... 145

12. 사이버대학 졸업 후 입학 ..... 146

13. 사이버 대학에 재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147

14. 저소득층 자녀 EBS교재 무상 지원 ..... 148

15. 원격대학원 설립 가능 여부 ..... 148

16. 사이버대학 편입학과 가능하도록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149

17. EBS 출판부 사회탐구 영역 인원 ..... 150

18. 사이버대학교의 관리강화 ..... 151

**제6장 평생교육**

1. 과외에 관한 형평성 없는 법률 ..... 155

2. 마이스터고 출신 대학진학 ..... 155

3. 개인과외 교습 가능? ..... 156

4.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규정에 대하여 ..... 157

5.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	157
6. 「평생교육법」 개정(2007년 12월) 이후 학위취득을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	158
7. 통학버스 관련 ‘법’ 적용의 형평성 .....	159
8. 「평생교육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	159
9. 글로벌 교육 관련 포럼 정보 .....	161
10. 대한민국 인재상 회수 가능 여부 .....	161
11. 직업체험 제도 도입 .....	162
12.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수업시간 배정 관련 .....	163
13. 부모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	164
14. 경기도 진로교사들의 지위가 확고해야 진로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164
15. 진로체험과 수련활동 분리 시행 .....	166
16. 진로진학상담교사(부전공)를 희망자에 한해 전공교과로 복귀 요청 .....	166
17. 진로진학상담교사 병가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 .....	168
18. 정규 교과시간에 보조강사가 수업 진행하는 경우 .....	169

## 제7장 국제협력

1. 인정유학의 범위 .....	173
2. 해외대학 한국분교설치 .....	173
3.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이 가능한가요? .....	174
4.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자의 정확한 기간 해석 ..	175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	175
6. 한·중관계 악영향을 미치는 유학생 모집 및 관리 비리 고발 .....	176
7.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 .....	177
8.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 학위 인정 여부 .....	177
9. ‘채드워송도국제학교’가 각종학교 범주 포함 여부 .....	178

## 제8장 인사 및 행정지원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거한 직급보조비의 미지급 .....	181
2. 동문회 행사시 경조사비 등 학교장 명의 예산집행 여부 .....	183
3. 2014년도 구매목표 비율 .....	184

4. 불합리한 공무원 여비 기준의 조정 .....	185
5.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 사용시 .....	187
6.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산학협력단 적용 .....	188
7. OO대학교 직원 여비 지급 .....	188
8. 교육훈련여비 중 일비 지급 .....	189
9. 지역별 대학교 졸업자 수(1980~최근) .....	190
10. 전국 소재 초·중·고 대학교 현황 .....	190
11. 초·중등 정보공시제도 개선 요청 .....	190
12. 고등기관의 교원관련 허위 공시에 대한 행정조치 .....	191

## 제9장 기타

1. 국정감사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 작사자 규명 재심의 촉구 요청 .....	195
2. 고려 시대 '공조 전서'의 역할 및 품계 문의 .....	195
3.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개설 .....	196
4. 초등 6학년 참고서 점역 필요 .....	196
5.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원 채용 시 의무 근무 기간 및 원소속 기관(시·도교육청) 복귀 ..	197
6. 장애인학교 학교기업 공간 확충 협조 요청 .....	198
7.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개명 절차에 대하여 .....	199
8.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 교육 접속 오류 건 .....	199
9. 중앙교육연수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절차 .....	200
10.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 방안 .....	200
11. 중앙교육연수원 신청 모바일 연수 신청에 대하여 .....	201
12.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초기화 .....	201
13. 2013 EPIK 8월 사전연수 조교 활동 증명서 발급 .....	202
14.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 선발시 내신성적 산출 .....	202
15. 국비지원 유학 일정 .....	203
16. 사우디 아라비아 유학생 한국어능력 시험 문제 .....	203
17. 외국인장학금 제도 .....	204
18.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을 지원으로 피해 사례 .....	205
19. GKS 해외입양아 지원자격 .....	206
20.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	207

21. TOPIK 시험 등록 및 응시료 결제방법 개선 요청	208
22.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의 네트워크 개선 촉구	209
23. 국비유학 조건에 대하여	210
24. 문부성 교원연수생 파견 조건 개선	211
25.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212
26. 토픽시험 텍스트 제공 여부 문의	212
27. 2015 헝가리 국립대 초청 장학생	213
28. 국외유학인정서 서류 발급 요청	213
29. 자녀의 일본유학 학자금후원	214
30.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215
31.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터키	215
32. 일본 문부성 연구 장학생	216
33. 국비유학생 지원 신청 절차	217
34.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	217
35. 국립국제교육원 기능기술인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개선 검토 요청	218
36. 독일 유학하려면 어떤 학교 입학해야 하며, 국가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219
37. 재외국민자녀 한국교과서 배부 날짜(개학일)에는 받을 수 있게 통관협조 요청	220
38. 교육부장관님께(국제결혼이민자 한국어 토픽시험 합격 증명발급 지연)	220
39.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	221



제 1 장

유아교육



## 01 임대유치원 학급 증설

### 질의

1991년도에 설립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지·교사의 소유주체가 설립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2학급 80명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학부모님들의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3학급 70명 정도로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17조의 규정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현행 기준을 갖추어야 해서... 임대유치원 형태... 설립자가 교사·교지의 소유주가 아닌 형태로는 학급을 증설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같은 규정 부칙3조에 보면 시행당시 설립된 기존의 학교는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립된 유치원은 비록 임대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교지, 교사, 수익용 재산 외에는 자가 유치원과 동일하게 현행 규정에 맞는 교실이 3실 이상 나오면 학급증설 변경인가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 회신 2014-07-0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의 취지는 구 기준으로 조성된 교사와 교지가 현행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구 기준에 따라 설립한 유치원의 인가가 유효할 것이라는 설립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학급을 증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유치원의 현행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 전체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학급증설 인가 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교사·교사 소유주체에 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전체가 현행기준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02 유치원 설립 인·허가

### 질의

법인(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유치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유치원을 설립 하고자 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따른 설립자가 개인 또는 법인 이라 하였는데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인이 해당 되는지요?(법인 이라 하면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학교 법인, 등 기타 법인)영리 법인에서도 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동산 및 기본자산에 대한 기부행위를 통하여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 회신

2014-08-28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현행법령’ 상 영리법인의 유치원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 2조(정의)에서 정한대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인을 의미하므로 영리법인도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1조의 준용규정과 「유아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치원회계의 타 회계 진출이나 영리목적의 유치원 운영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03 유치원 회계

### 질의

1.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영리법인은 설립자가 되고 설립된 유치원은 영리법인의 부설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2. 위와 같이 설립된 유치원은 재단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부설로 설립한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동일한 회계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회신** 2014-08-28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영리법인자격으로 유치원을 설립하실 수는 있으나, 설립주체는 영리법인이지 유치원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의 “사립학교경영자” 자격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 경영하신다면, 사인이 경영하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같은 법 제51조의 준용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립학교법」 제2장에 따라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치원을 설립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른 준용규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04 유치원 입학연령 기준

**질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입학 공고문을 보니 만3세가 입학이 가능한데 201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2012년 1월 생으로 2015학년도 학기 시작 전에는 만 3세가 됩니다. 「유아교육법」 2조에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고, 동법 11조에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유아로 한다. 동법 12조에는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11조에는 유치원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3세 유아가 유치원 입학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유치원 모집공고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입학자격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792호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 공고문을 작성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조기 및 유예 입학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입학에 관해 설명에서도 조기 및 유예 입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기준연령이 만 3세이고, 저의 아이와 같이 학기 전에 만3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입학원서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은 관련법에 명기된 학부모와 유아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학하지 않더라도 만4세에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에도 같은 문제점이 생기니 지금 명확한 해결책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기 및 유예입학에 관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면 유치원모집공고에서 관련 사항을 강제로 명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유치원 모집공고가 현재 되고 있고, 교육과학부의 합리적이 결정과 이에 근거한 빠른 조치로 저의 아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회신** 2014-10-2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관련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입학)의 대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아모집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유치원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 전국 유치원 주소록

**질의**

전국 유치원 연락처와 주소록이 필요합니다.

**회신** 2014-10-2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 홈페이지 내 정부 3.0 정보공개 메뉴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유치원 일람표를 통해 기본현황(지역 및 설립구분, 유치원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관련

**질의**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맞벌이이며, 이곳

저곳 상담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방침(문서)에 너무 얽매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특활도 없던데, 영어나 과학 같은 건 정규수업 말고 따로 더 보충하는 수업 같은 게 하나, 두개정도는 더 배워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에듀케어반 아이들은 무조건 5시에 하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따로 하는 것 보다 유치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무조건 5시에 하원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방침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에게 5시 하원도 빠른 것이긴 하지만, 맞벌이 아이들은 대부분 일찍 7시에서 8시 사이엔 등원을 하며, 혹시 일이 있거나, 다른 활동이 있을시(특활활동이 없으므로...)무조건 그 시간에 하원을 시키라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아래서 큰 틀에 맞추되, 좀 더 자유롭게 그 유치원의 특성과 지역특성에 좀 더 맞게 유도리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 회신 2014-11-0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시간 이후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에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을 유아 1인당 1일 1시간 이내 1개의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학하시고자 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세부 운영에 대해 문의하시어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용에 대해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케어반 유아가 5시에 하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기준이 일일 8시간 운영 이상일 경우 지원되어 이 기준에 맞추어 귀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께서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유치원과 상의하시어 5시 이전에 유아를 귀가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07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우선순위 여부

### 질의

4살, 6살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 속터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참 다행히 민원 글을 올립니다. 내년엔 5살, 7살로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는 기존 어린이집에는 3세~5세 위주로 아이를 받기 때문에 나이가 차서 다른 데로 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병설? 그건 전업맘이나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병설은 초등학교와 같이 방학이 있기 때문에 워킹맘은 감히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선택은 오로지 유치원 어린이집 대비 유치원비는 약 2배 비쌉니다. 그런데 자리도 없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좋은 유치원 보낼려고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구요? 제가 원하는 건 일주일에 2~3번 아침에 7시40분에 받아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아침 8시 반 출근인데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현실은 주변 유치원 10곳 문의 결과 단 1곳뿐입니다. 그런데 거긴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한답니다. 추첨 좋죠. 민주적인 방식 그런데 워킹맘은 추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도와주는 분을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우선순위가 있던데 유치원은 없더라고요.

**회신** 2014-11-13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장이 유치원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우선 입학과 관련하여 유치원에서 우선입학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000님의 의견처럼 취업모 유아들이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권장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아 수에 비해 유치원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유아를 입학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08 보육료 대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으로 해결가능

### 질의

올바른 영유아교육은 차별 없는 예산집행에서 시작됩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련법령상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의 법해석문제와 상위법 위반문제 즉, 법률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을 뿐,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2015년 유치원 입학전형 시작되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과정) 어린이집 예산 파행으로 우려됐던 어린이집 원생의 ‘유치원 쏠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2005년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시행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근거법령을 정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법적공백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유아교육 범위로 포섭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제도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회신** 2014-11-27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위탁기관은 2005년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시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게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 넓은 사회적 합의와 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재원이 감소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소요예산 교부 및 시·도교육감과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09 유치원 설립 조건

**질의**

사립유치원 설립조건에 교지는 당해유치원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 상 유치원부지인 곳에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아직 토지구획 준비 중이어서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토지등기부등본 자체가 현재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건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설립자 본인의 토지공사 대금 완납 증명서, 토지공사가 발생한 사실확인서 있음) 개원예정일은 2016.3.1.이고 공부등기는 2015.12.31.이후 가능한데 현 시점(2015.1.5.)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서가 접수되면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이 가능할까요?

**회신** 2015-01-0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사립유치원 인가권한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있으므로 부지매입 전에 반드시 관할청에 해당 지역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유치원 설립 예정지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설립 예정지의 토지가 구획되지 않아 등기부 등본 상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의 지번과 경계선이 명확하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설립 예정 유치원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도 할 수 없으므로, 설립예정지의 공적 증명인 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설립계획서 제출시점의 토지경계선이 구획 정리 후 변경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가능해 질 경우, 설립 예정자에게 주어질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10 유치원 장학자료

**질의**

유치원 관련 장학자료를 가장 처음 발행된 자료부터 최신자료까지 모두 보고 싶은데요. 사이트 PDF파일이 아니라 책자로 되어있는 장학자료를 보려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 교육청에서 대여나 구매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5-01-07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유치원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의 장학자료는 파일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책자로만 개발, 보급하였고, 이후 파일이 있는 장학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메뉴(정책→유아교육→교원)에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부 장학자료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하지는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해외 취득 교사 자격증의 국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전환 가능

**질의**

캐나다에서 Early Childhood Educator, Infant/Toddler Educator, Special Needs Educator 3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구 귀국하게 된 OOO입니다. 캐나다 자격증을 한국자격증으로 전환하여 취업하고자 하오니 한국자격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참고사항 ① Early Childhood Educator(유치원 정교사) ② Infant/Toddler Educator(보육교사) ③ Special Needs Educator(장애아동 교사)  
\*캐나다경력사항 ① Vancouver Society of Children Centre 2년근무 (2008년~2010년) ② Purpose Society of Children Centre 2년근무 (2012년~2014년)

**회신** 2015-01-1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캐나다에서 취득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유아교육과에 편입할 경우에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공기준 이수과목과 유사할 경우에는 대학별 일부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2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 질의

교육부에서 내려온 법이 바뀌었다고 아이들을 8시차를 태워서 오후 5시에 하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오전 9시~오후 4시였는데, 이렇게 늘어나버리면 아이들 체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9시에 차타는 아이들은 6시에 하원을 합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회신** 2015-02-16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 등을 확보하여 1일 4~5시간을 운영하고(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방과 후 과정은 유치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도록 우리부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13 CCTV 설치 등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질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CCTV 설치 등을 통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회신** 2015-03-0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유치원 교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추진과 유치원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 명령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교실 등 실내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14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변경에 대하여

### 질의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되어 고시문이 다시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에 관한 것도 개정이 되나요? 개정이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 회신 2015-03-0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1일 3~5시간을 4~5시간 기준으로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2015.2.24)하고,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는 개정 내용(1일 4~5시간)을 유념하여 기존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 15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누락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

### 질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가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신청을 늦게 한 경우 자격 신청 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 회신 2015-03-20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및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거,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아학비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이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 연수 시 본 내용을 안내하여 유치원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관련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6 e유치원시스템 회원가입 blocking

### 질의

올 3월에 5세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학비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면 e-유치원시스템에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얼마를 지원받는지, 언제 받는지, 내가 내는건지, 유치원에서 신청하는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일정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난 주 부터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회원가입을 할 수 없어서 컴퓨터를 다른 것으로 여러 번 옮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컴퓨터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다가 도저히 안되어서(사이트에 보니 원격지원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조차 작동이 안되어더군요) 전화로 문의했더니, 어이없고 황당한 답변입니다. 유치원 접속자가 많고 업무가 많아서 학부모 회원가입은 막아두었다고 함.

### 회신 2015-03-26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올해 3월은 학부모님들의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별도의 회원가입 제한이 없었으나, 시스템 과부하 또는 PC환경설정 등에 따라 회원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담원과 상담하신 내용은 상담원의 착오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안내되어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가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콜센터'(☎1544-0079→7번→2번)를 통해 원격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불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정책(특례법) 규제 건의

### 질의

유치원은 유아수용계획이라는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1반조차 증반하기 어렵고 인규입예정이 없는 지역은 유치원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10여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아교육위탁기관은 특례법을 적용하여 조사 없이 유치원설립허가가 된다는 것은 형편성에 벗어난 것이므로 규제건의를 합니다.

**회신** 2015-04-2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정책’은 2015년 저소득층 자녀 등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 및 유아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유도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시행한 정책입니다. 동 정책은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5회 연장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하여 그동안 자연감소와 유치원 전환을 병행 추진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기관 연장을 추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②(유아 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말씀하신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정책(특례법)은 내년 2월 29일 이후 자연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문의하신 새세운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지역청에 동 민원을 전달하여 답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참고로 교육부는 위탁기관 지정 시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와 유치원 전환 계획의 적정성, 이행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지도 및 유아학비지원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당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과 관련하여 유치원 설립조건에 어긋난 점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18

## 유치원,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구성 시 유치원 교원위원의 당연직 부여

**질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항은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와 같이 통합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로 유치원교사가 1명이고,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교감은 없어 원감 겸임자가 없는 경우, 교원대표 자격을 갖춘 자가 유치원교사 1명 외에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유치원 교사를 ‘당연직’교원위원으로 정하는 것이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지요?

※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음

**회신** 2015-04-30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은 유치원장이며, 그 외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19 유치원비 신용카드결제 허용

### 질의

동네 유치원을 저희 아이가 다니는데 신용카드 결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신용카드 결제 받는 곳이 인천인가는 10%에 국공립도 4%대로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와 유치원의 경우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5-1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현재 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및 별표 3의 2,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사업자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 3,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유치원이 확대되도록 결제 수수료가 0.01%인 아이행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유치원에 카드가맹 계약을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높은 카드 수수료(약 2%)를 이유로 유치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으나, 9월부터는 많은 유치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교(유치원부터 대학교 까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20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질의

2016.3.1.개원 예정으로 사립유치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4.4.에 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당초 2015.3.1.개원 예정이었으나, 2014년에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2014년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2015.8.31.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받을 당시에, 설립인가 신청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공사를 완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건축공사는 2015.8.31.에 주요구조부 공사를 완성하고, 2015.11.30.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공사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15.8.31.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인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인가 규정에 따르면 지금 우리 유치원 공사 일정으로는 도저히 8.31.까지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남은 기간 동안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예정에 없었던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성된 유치원 건물을 설립인가할 때 확보하여 인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리 승인 받아서 예전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에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 공사를 강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할 지원청과 교육청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이미 승인받은 유치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신** 2015-06-17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이미 설립계획 승인 및 인근 주민과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2015년 8월 31일로 연기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경우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가신청서 제출 요건(유치원 건물 준공완료)을 적용할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인가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이라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도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 장

특수교육



## 1 특수교사 정원 확보 요청

### 질의

OOO대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과 OOO입니다. 우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줄이고, 정교사의 수를 확충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경우 법정정원의 미확보로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기간제 교사, 비정규 특수교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아특수교사의 경우에는 50%가 기간제 교사이며 초·중등 특수교사의 경우에서 30%인원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수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관찰 및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에 기간제교사의 남발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육의 질 또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교사들을 늘려주시고 이에 따라 우리아이들의 수업권 또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교육 기관이 균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아 상당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쾌적한 환경 그리고 편리한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교사 해소와 특수학급당 법적 정원 준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회신 2014-08-19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2015년 특수교사 선발인원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인원 수는 교육부가 매년 안행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신청하여 증원하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교육부는 올해에도 안행부에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요청하여, 부처 간 협의 및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10월경 확정 증원 인원을 반영한 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의 해결을 위해 특수학교(급)을 신·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수학교(급)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현재 특수학교는 166교, 특수학급은 9,617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일선교육청의 특수교육 실무사 호칭 변경 반대

질의

특수교육 실무사를 ‘특수교육 지도사’로 호칭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제 25조, 제 26조 3항에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조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 또는 현장에서 특수교육실무사라고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교장, 교감)가 특수교육 지도사입니다. 특수교사와 관리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을 행하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 현장 및 교육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명칭)은 특수교사의 고유 업무인 행정, 교수, 상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모든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지도, 즉, 교사 및 관리자의 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은 학교 교사와 관리자 및 행정직원, 학부모 등에게 ‘교육지도사’라는 명칭과 ‘교사’라는 명칭이 자칫 혼동되어 업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사의 고유 업무인 교육, 행정, 상담 등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며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의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에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는 일반 사범대나 교육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명칭이 반드시 다르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에서만 교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도사라는 명칭을 학교 안에서 부여 한다면, 이는 장애인은 교사가 아닌 자에게 지도,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현장의 장애인 차별관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4. ‘특수교육실무사’라는 명칭은 현재 일반교육에서도 ‘행정실무사’라는 명칭이 상용화 되고 있으나, 교육실무사는 일반교육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공문서 처리) 배부는 행정실무사, 행정 업무 결재 및 처리는 특수교사의 업무이므로 이 명칭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1~4까지 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 ‘특수교육실무사’의 명칭이 ‘특수교육지도사’로 변경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칭이며, 2011년까지 상용화 되었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재 회귀해야함을 주장합니다. 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행정 교수 업무가 아닌 장애아동의 신변 처리, 이동 등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장애인 활동 보조원’이란 명칭 개선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이동 및 신변보조는 안전을 위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특수교사가 하는 게 옳습니다. 중증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가 집중 지도할 수 있도록 급별 학생 수를 줄여주거나 한 학교에 두 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게 장애인 교육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정교사 충원율 61.6%(2014기준)로 모든 교사들 중 최하위인 특수교사의 수급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4-11-06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 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1항에는 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 인력) 제3항에서 보조 인력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만족도 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금번 주신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후 재취학 시 진급(졸업)에 대하여

질의

만12세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과거 초등취학연령(만6세) 당시 취학유예를 시키고 그 뒤 거듭 유예를 하여 장애어린이집을 다니다 연령이 높아져 어린이집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지난 2014년 6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초등학교 취학을 의뢰하였고, 8월26일자로 특수학교(초등과정 6학년)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진급 및 초등학교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4-12-0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한 경우,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중학생 장애학생 졸업 요건의 결석 일수에 대하여

질의

장애학생도 결석일수가 많으면 졸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석하면 졸업을 못하는지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1-20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석일수가 부족한 경우의 졸업 여부는 해당 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 특수장애학교 수업방식에 대하여

## 질의

특수학교에서 3시간 연속 시행에 의한 수업 (세분의 선생님 참여)입니다. 교육과학부 연구사님(영어, 수학, 체육) 영어선생님에 의한 수학, 체육(예를 들어서요) 영어로 수업 진행입니다. 수학적 지식이 감안된 영어, 체육 수업입니다. 특수학교에서 기초미달학생에 의한 정신지체(00학교), 정서장애(00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재활교사, 전환교사에 의한 1:1 수업 혹은 다수업적인 측면에서 수업하기입니다.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동 연령대 수업 참여입니다. 심화과정은 동 연령대, 동 연령대가 아닌 현 상태의 수업 지식을 다 습려했다는, 또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선생님의 포트폴리오에 바탕을 둔 선행지식의 선배님들의 수업 참여 유도에 의한 학생 중심적인 수업 방법, 선생님 주도 하에 수업 방법입니다. 때로는 혼합적이면서 그룹의 완전학습 하에 컴퓨터 중심의 수업적인 접근의 도움, 미술, 음악, 체육, 영어, 수학 등등 다 학문적인 부분적인 지식의 인출, 전체적인 지식의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 수업입니다. 더블제도 에서 나아가서요 쓰리 블락타임제 수업입니다. 개별적인 학문에서 다학문적인 학문까지의 연결 수업이면서, 이러한 기존의 학문적인 수업을 깰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험화 되지 않는 학습자 스스로 이끌어 지는 수업입니다.

## 회신

2015-04-2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애종별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별로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의 수업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수업방법에 관한 견해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교외 현장실습 시 장애 대학생 도우미 활동 인정 방법

## 질의

사범대학에서 장애대학생과 도우미가 함께 교외로 교육실습을 나가 도우미가 장애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도우미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신** 2015-05-26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교생실습 등 교외로 현장학습을 나가는 경우에는 교내와 달리 장애학생 교육활동 도움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이 어려우므로, 비장애학생(도우미)이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준 시간, 장소,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활동보고서, 실습기관장의 확인서, 서약서 등 학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학 자체계획 등에 따라 검토, 확인 후 국가근로장학금(도우미 활동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7

### 장애아동 12세 미만 무상지원 혜택 여부

#### 질의

7살 다운중후군 지적장애아동을 둔 엄마입니다. 4살 때부터 아이 보육문제로 여러 번 부딪치면서 아이가 나일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고민만 들어갑니다. 늘 장애인 혜택에 대한 자료를 보면, 12세 미만 무상지원이라는 말 때문인데요. 실상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무상지원은 전담 어린이집이나 가능하니 말입니다.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은 불가능하며 전담이나 통합 어린이집은 대기나 경쟁율이 치열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 무상지원이라는 말과 달리 전혀 혜택이 없으니 말입니다. 장애인 무상지원이라는 전담을 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싸우며 울고 왔네요. 장애아동이 일반 어린이집 다니면 일반아동이 되는 건가요? 무상지원이라는 말 옆에 전담이나, 통합어린이집만 가능 이란 말을 넣어 주시던지요. 또 더욱 어이없는 사실은 유급문제입니다. 일반 아동은 유급원을 유급하면 무상지원인데 장애아동은 유급하면 유상이라니요? 뭐 물론 말로는 다른 장애아동에게 기쁨 주기위해 유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유급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일반 아이보다 유급해야만 하는 장애인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오히려, 준비가 덜한 장애아동들을 위해 유급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도 아직은 말이 더디고, 체력이 작아 유급을 하고 싶는데 장애아동인 아일 전액 다 내면서 유치원에 유급을 시켜야 하는 게 맞는건지? 말입니다. 가끔 장애인 12세 미만 무상지원이라는 글을 볼때 화가 납니다. 이러한 전제사항들이 있는지 알고는 계신지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장애인을 두지 않은 일반인 누구도 장애아동은 다 무상교육으로 압니다. 허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정말이지 말뿐인 정책입니다. 장애아동들

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이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정책에 맞는 실상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이지 말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12세 미만 장애아동들 교육 무상지원이라는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회신** 2015-05-31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별지 제 7호에 따르면, ‘유급’이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서 유급을 하게 될 경우,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8

### 특수교육보조원의 장애학생 방과 후 지원 선택 여부

#### 질의

1. 관련: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934(2015.5.18.)
2. 위 공문 해석에 대해 재질의 합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인력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5조 역할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회신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방과 후 교실(수업 및 학교활동)은 학교가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포함함.
  -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의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특수학교(급) 교사, 통합교사, 교과 교사 등)를 의미함.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시 담당교원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음이 애매한 공문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가 ‘특수교육보조원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음’이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마치 특수교육보조원이 방과 후 지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특수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현장을 혼란

에 빠뜨림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위 공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며 책임있는 분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여 다시 재질의 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과정 및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방과 후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보조원이 방과 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특수교육정책과는 이런 식의 애매한 법률해석을 해서 혼란을 주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5-06-09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활동 전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교가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포함되므로 교사가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만족도 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9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의견서

#### 질의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의견서 저희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9개 시·도의 초·중·고 건강장애 학생들의 화상강의 학교인 [꿈사랑학교]의 학부모회 회원입니다. 올해 들어 이 학교가 뜻밖에 재정상의 어려움에 부딪쳐서 저희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그 내역을 설명 듣고 아래와 같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저희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구합니다. [꿈사랑학교]는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배분을 받아 내려보내 주는 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년도

[꿈사랑학교] 전체 등록학생수를 뜻하는 ‘총 이용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일부 지자체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 책정기준도 전년도 ‘총 이용 학생 수’ 기준이 아닌 전년도 ‘월평균 이용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원금이 삭감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꿈사랑학교]의 경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건강장애의 특성상 자녀들 중에는 수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수업참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월평균 이용 학생 수는 등록 학생수보다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학급분반, 교사임용, 교구교재비 등의 책정은 모두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평균 이용학생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학교 측과 저희 학부모의 판단입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어린 아이들이 아픔과 어른도 이기기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뎌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잦은 결석으로 유급될 것을 우려하고, 공부할 기회를 놓쳐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상황에서 [꿈사랑학교]와 같은 사이버학교가 큰 힘이 되고 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교육당국의 노력은 저희 부모의 기대와 거리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함께 누려야 할 교육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노라면, 견잡을 수 없는 비애와 함께 분노의 마음이 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측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부모 일동은 더 이상 저희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배제 당하는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뜻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꿈사랑학교]의 수업을 포함한 운영 전반이 파행을 겪고 저희 자녀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같이 의견서를 올립니다. 여기에 저희 [꿈사랑학교] 부모회원 일동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저희의 바람을 이전 하며 조속한 답변과 조치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1. [꿈사랑학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교육예산 지원이 우선 절실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꿈사랑학교」로 발송된 ‘시·도별 건강장애학생지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꿈사랑학교]에 지원되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생 1인당 지원 단가가 1,020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85천 원이 되며, 여기에 월평균 이용학생수를 곱하여 지원할 경우 총 이용학생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80천 원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액수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낮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 생각되므로 시급히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생 1인당 지원 단가를 정하여 행하는 방법보다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소요예산을 근거로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2. 사이버학교 교육지원 시수 및 과목 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꿈사랑학교]의 교육시수를 보면, 초등부 1일 1시간, 중·고등부 1일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수는 유급방지를 위한 최소 이수 시간일 뿐이므로,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시수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주치료 후 원적학교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원적학교 동급생과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시수 및 과목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요청합니다.
3.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온전하고 원만한 원적학교 복귀입니다. 현재 학교복귀에 대한 지원은 화상강의 학교나 병원학교 운영만 있을 뿐이지 학생, 학부모, 화상강의 학교(병원학교), 원적학교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복귀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를 마친 건강장애 학생들이 원적학교 복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장애 학생들의 원만한 원적학교 복귀를 위해서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강장애학생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건강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로 여겨집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과 전통적으로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정책상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 연구와 지원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학교복귀 등의 현안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기적으로 현안을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구안하여 건강장애학생 관련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회신** 2015-07-07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교육부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 사업을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통상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의 경우 3년간 지원하게 되나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안내하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000께서 주신 의견을 비롯하여 향후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현장요구 등을 적극 수렴하여 건강장애학생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3 장

초·중등교육



## 1

## 교사 타 시·도 진출 기준이 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

## 질의

교원에 대한 타 시·도 진출 기준 및 일방전입 기준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교육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014-09-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교육청간 자율적 협의 및 해당교육청 교원수급 상황에 따라 인사교류 및 일방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진출 기준 및 일방전입 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수립·실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2

## 교사 신규 임용시험 장애인 합격 미달시 일반 모집 전환 여부

## 질의

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인원 중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인원 미달시 남은 인원이 일반 모집인원으로 전환되는지, 또는 다음년도로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으로 이월되는지 여부

## 회신

2014-12-0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장애인 구분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 일반인으로 채용하지 못하며, 시·도별 교원 정원이 매년 조정되므로 장애인 모집 미달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사립교원의 난임 휴직 가능 여부

#### 질의

모성보호를 위한 난임 휴직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법이 있는지?

**회신** 2015-02-0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에 의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난임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에도 2015.3.27자로「사립학교법」제59조 제1항 제1호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난임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사립학교 교장의 잦은 전보가 가능한가요?

#### 질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은 학교 개선사업 등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특별한 이유없이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75%가 넘는 서명을 통해 전보는 보류되었으나, 6개월 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잦은 전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2-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거 사립 각급학교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 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할 수 있으나,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 및 전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교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하여

### 질의

부장교사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동료교사가 있고 저 또한 교권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도 교권보호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 2015-06-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1항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교권보호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

### 질의

1.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 등 폐지 훈령[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0호, 2009.9.23. 일괄폐지]관련입니다.
2.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은 2002.1.16.에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27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9.9.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0호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 지침 등 폐지 훈령에 의하여 일괄폐지가 되기 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의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이 제정된 이유와 폐지된 이유를 알고 싶어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을 교육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보았으나 위 폐지된 훈령을 포함한 제·개정 연혁 및 실질적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 등 폐지 훈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검색은 되지만 폐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입력되어있지 않고 막연하게 제1조 목적

- 에서 단지 실효성이 적은 소관 훈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 지침’의 제정과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연혁 및 실질적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를 알고자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신** 2015-01-2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의 반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 등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습니다. 수익관리 규정 부분에서도 ‘법인의 법정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유지·경영학교에 전출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익이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의 전환 및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등이 포함된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 받아 부담을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 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교육시설의 확충·학생장학금·교원연구보조비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필요경비에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사실상 폐광된 광산 및 수익실적이 없는 재산은 수익성 있는 타 재산으로 대체(국·공유 재산 대부추천, 재산 전환 지도, 대체 재산 알선 등)하도록 권장한다.’ 등의 내용은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적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훈령을 폐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 법제처 고등학교이하 설립 규정 중 인접이란?

#### 질의

(주)000하우스산업개발의 000대리입니다. 저희 업종은 건설업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내용 중에서 제5조 3항 문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조항 중에 위의 인접 하여 란 단어의 뜻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과연 인접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건지, 바로 옆에 닿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과 2~3m 정도 옆에 있어도 인정으로 보는 건지 인정의 뜻을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5-05-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인접”에 대한 법령상의 의미는 “이웃하여 있거나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허가시 “인접”에 대한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교육청에서 거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8

### 중등학교에서 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질의**

학교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 연구소등 부설 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구소의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없습니다.

1. 학교 부설 또는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부설로 가능한지?
2. 이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3. 그리고 만약 법인에서만 가능하다면 법인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5-2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대학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에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5조에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 제15조 교원의 임무에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대학교수의 주요업무에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초·중등학교에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1.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 학교나 법인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연구비로 사용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학교로 전출되어야 할

법인 수익금이 연구소의 운영비로 사용되어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 법인에서 연구비로 전출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어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의 연구소 설립의 가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설립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9 순회교사제도 운영

### 질의

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 회신 2015-05-2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순회교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교육감이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상기 법적근거와 같이 순회교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경기지역의 순회교사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봄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 신청 가능한지?

### 질의

학기 중 채우지 못한 봉사활동을 봄방학 중 신청 후 하려했으나 봄방학 중에 하는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없단 선생님 말씀에 검색해보니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성적 때문에 어부지리로 봉사활동

등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부모가 대신하고 봉사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봉사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횡단 자전거국토 횡단 등은 봉사활동 시간을 한번에 60시간씩 주는 경우도 있는데 순수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아이들이 알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학기 중 무조건 채워야 하고 봄방학엔 하면 안 되는 봉사활동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은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5-02-1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9조 1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봄방학 때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2월 말까지 생기부 기록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2월 말 하루 이틀 전에 마무리하여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2월 말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정정하여 생기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학부모가 대신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인정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단순 참여하는 행위는 봉사활동에 인정받을 수 없으며 봉사활동 증을 해당기관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발행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인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 11 봄방학 기간 중 봉사활동 입력방법 개선 요구

**질의**

초·중등 학생부 봉사활동 기재 내용을 보면 봄방학 중 봉사활동 내용을 현재학년도 담임이 이전학년도의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이전학년도 학생부입력은 학생부 정정으로 가능한데 봉사활동실적을 이전학년도로 입력하려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정정 후 입력해야함. 학생의 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없을지. 봉사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는 안되는지.

**회신** 2015-02-17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이므로 해당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해당학년도 기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기간을 다음 학년에도 간소화하여 때때로 변경하게 된다면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선생님들께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 혼선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봄방학에 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12 장기 학교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하여

### 질의

맞벌이 맘 인데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초 3, 7세 유치원, 5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의 학교 달력을 보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어서입니다. 초등학교는 5월 1일이 개교기념일 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금) 휴교 토, 일 쉬고 5월 4일은 월요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화) 5월 6일, 7일, 8일 5월 1일과 5월 5일만 휴업인데 5월 10일까지 검은 날짜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모두 쉬어 버리네요. (주말 포함하면 10일간의 연휴...) 방학일수를 미리 당겨 몰아서 신다지만 이렇게 되면 맞벌이 맘은 어디에 애를 맡겨야 하나요? 회사에 일주일 가량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마다 5월, 9월이면 걱정이네요.

### 회신 2015-03-1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중에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 달, 10월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학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학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맞벌이 학부모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방학 기간 동안 실제적이고 내실

화 있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는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방학 제도가 운영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3 중학교 성적표 석차 미산출에 대하여

### 질의

중학교에서는 시험 후에 석차를 산출하지 않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교에 문의 했더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석차를 산출한 성적표를 가정에 발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석차 산출이 법으로 금지되었나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어떤 법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석차산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또는 교육청 자체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에게는 석차를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이런 경우 석차를 학교에 문의 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원칙일 것 같아요.

### 회신 2015-05-18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중학교는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산출하며, 성적표에는 성취도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를 표기합니다.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의 별지 9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및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 14 학생 봉사활동 범위 개선 요구

### 질의

학생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취지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시간을 정해 고입내신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교육부에 묻겠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너무 적어서 대부분 쓰레기 줍고 다니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줍고 다니면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삶의 보람을 체득합니까? 쓰레기 줍고 다니면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길 바라십니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닌가요?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대상 학생들이 취지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회신** 2015-07-0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봉사활동 시간에 모든 학교가 쓰레기 줍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활동 자체가 봉사활동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쓰레기만 계속 줍게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분노를 사신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 학생들 교육과정, 재정 상태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지 학교에서 계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하반기 봉사활동 담당자 협의회에서 말씀드려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봉사활동이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 한글 맞춤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질의

1. ‘한글 맞춤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사를 제외하고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 인터넷 댓글이나 카톡문자 등등을 보노라면 우리말이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하고, 어법에 맞지 않게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쉽게 그렇게 대충 글을 쓰고, 문자를 보냅니다.
3. 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와 있는 기사 중 '치명적(치명적인)'을 검색해 보니 이 '치명적(치명적인)'이란 말을 사람, 매력, 유혹, 심지어 음식의 맛에도 '치명적(치명적인)'이란 말을 하고,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아~ 우리말이 지금 카톡문자 보내는 것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학교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 이렇게 우리말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내 자신에게 혼자 중얼거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는지 60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꼼꼼히 생각하다가 이 글을 올립니다.
4.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때 한문 문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영어와 어순이 같게 중국어 문법을 정비하였고, 영국의 철의 여인 대 처 수상은 수상으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나라말 바로잡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신** 2015-05-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요즘 띄어쓰기를 안 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부적절한 어휘 사용 문제에 대한 우리말 교육 방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 먼저 우리말 교육 관련 현행 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중등) 어문규범\_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어휘의 유형과 의미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고등)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 올바른 문장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

을 탐구한다. 2)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생활문화 개선에 힘쓰고자, 실제 구어/문어 자료와 다양한 매체 속 국어자료를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실제 국어 생활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탐구와 적용’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한글맞춤법 지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국어생활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국어사랑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건의

### 질의

민원을 넣게 된 이유 되와 돼, 나올까와 낱을까의 구분도 하지 못하고 띄어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덜 배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일해라절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외않되?’ 같은 족보도 없는 이상한 한국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시 너무 입시 중심적인 한국의 국어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5-06-1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국어교육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맞춤법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귀하께서 갖고 계신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에 있으므로, 우리말을 사랑하고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17 친일행적 문인 작품 교과서 배제 요청

### 질의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보인 문인들의 명단을 근거 자료와 함께 발표한 친일 문인들의 행적은 조선총독부 기관지[매일신보]나 해당 문인들의 저서에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학생의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이러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들이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는 명목 하에 버젓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

은 차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진행할 때 아래 친일문인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작품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등재할 경우에도 작품 상단, 하단 및 해설 부분과 수업 지도안에 해당 문인의 ‘친일 행적’에 대한 본시수업보다 자세한 설명을 반드시 달도록 하는 지침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신** 2014-08-1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검정교과서의 경우, 민간에서 제작한 후 검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되는 주제 또는 인물에 대하여는 교과서 저작자의 자율적인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안하신 특정 인물의 작품 수록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과정에 근거한 검정 기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18 특정인을 교과서에 기재 요청

**질의**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가 정평구’를 교과서에 기재 요청합니다. 김제출신 정평구는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 ‘발명가 정평구’를 학교 교과서에 등재 바랍니다.

**회신** 2014-12-0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교육부는 교과서 수록 제재 및 내용에 대하여 관련 학계의 객관적·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정된 이론이나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고, 특정인의 편향된 학설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내용을 수록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 내용은 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보편성 및 학문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9 교과서를 재편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등재할 수 있는지

### 질의

모바일기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편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등재할 수 있는지?

**회신** 2015-06-15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저작권법」 25조 등에 따라 학교 수업 목적이 아닌 교과서의 내용이나 사진 삽화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복제, 전송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 검정, 인정 교과서 채택 현황 및 교과서 점유율 정보

### 질의

현재 교과서 사업 관련 조사 중인 학생입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검정 교과서 합격현황과 인정 교과서 합격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업체가 가장 많이 합격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에서 합격이 되었을 경우, 각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선택에 대한 각 업체별 채택 현황도 궁금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2015-06-1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검·인정 도서 심사 등 제반 업무는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검정 심사 기관(검정 도서) 및 시·도교육청(인정 도서)에 위임 및 위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검정 도서 합격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사편찬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인정 도서 합격 현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검·인정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정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자율적으로 학교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전국 각 시·도별 개별학교가 어떠한 교과용 도서를 선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 요청

### 질의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칠 때 국정, 검정교과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시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고, 개인이 만든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5-06-3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교과용도서예규」 제2조에 의하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인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자료 또는 도서 등은 교과용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과용도서예규」 제3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국정, 검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이 제작한 교과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2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 질의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은 감사 나올 때만 정성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3교시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부터 선진국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운동부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회신** 2015-02-14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지침’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 명시하여 단위학교까지 안내하였고, 시·도교육청 체

육담당과장 및 장학관(사) 회의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안내 시에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규수업 이수 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2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청구기간 계산

### 질의

①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되어 의결(2014.7.2.) ②교장 명의 결과 통보서 작성(7.3.) ③등기우편으로 피해학생의 집에 배달(7.7.) ④피해학생 부모가 등기우편 개봉 및 확인(7.8.)

1. 위의 경우에 학폭 조치를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2. 위의 경우에 조치를 안날이 언제인가요?
3. 초일산입인지, 초일불산입인지요? 조치를 안날이 등기우편을 개봉한 날이라면 그 당일(7.8.)을 포함하여 10일을 계산하여, 7.17.업무시간 전까지 재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일(7.8.)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나요?
4. 청구인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빨리 진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왜 2개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까?

### 회신

2014-07-0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1.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날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 조치를 알리는 문서가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기산합니다.(7월7일)
2.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은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7월8일)
3.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 : 7월7일에 조치를 받은 경우 7월22일까지 재심청구 가능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7월8일에 조치가 있을 알았을 경우엔 7월18일까지 재심청구 가능
4. 서류가 청구인에게 도달하는 날과, 조치가 있음을 안 날과의 상이함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에 의해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24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해당없음”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여부

## 질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4-08-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

## 해당학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 공개 가능 여부

## 질의

OO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피·가해학생 측과 무관하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본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전에 대하여 어디까지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한가요?

## 회신

2014-10-28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전의 공개 여부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 안전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도 해당 학교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게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교 교원이라 하여도 업무 수행자가 아닐 경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의무사항인지

### 질의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학교폭력법」 제17조 가해학생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학교폭력 사안심의 결과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이 없이 합의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회신

2014-11-1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1. 현행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의무사항입니다.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0건이 될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없는 경우, 즉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 심의건수 1건, 조치건수 0건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27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처

### 질의

아이가 학교가길 싫어해서 차분히 물어보니 애들이 괴롭히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음성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니, “대가리를 부셔버리니...” 라는 등등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도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여자애들 4명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112에 신고하였고 해당 경찰서에 갔으나 경찰관은 10세 이하의 형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참도 못자고 괴로워하는 아이와 너무 억울하고 분해 뜯눈으로 지새우는 식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회신

2015-03-3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자녀의 사안을 알리시고 사안 조사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28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사항 이행

## 질의

1.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퇴학 등 기타처분을 받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포함)을 하여, 졸업 후 중학교 1학년이 된 상태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나 인용, 일부인 용결정을 받게 되어 다시 자치위원회를 재개최를 하게 될 경우 원래 받았던 초등학교에서 다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아니면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는지?
2. 만약, 중학교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 초등학교 때의 일이지만, 이를 관련 없는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개최되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는지요. 아니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지요?
3. 만약, 자치위원회 처분 전에 자퇴를 하게 될 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자퇴 또는 해외 유학이 가능한지요?

## 회신

2015-05-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1. 바뀐 학교급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학교급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3. 처분 이행 전 자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미이행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제10조 제1항 관련)  
교육강사(보건교사 포함 필요)

## 질의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는 안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제 10조 제1항을 보면, 교육강사에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만 들어있고 보건교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건교사 중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강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분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난후,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 시에는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4-07-2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묵묵히 힘쓰시는 보건교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자격과 관련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처 및 관계자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0 안전교육에 대한 법률 여부

**질의**

현재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10-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현재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학생) 대상 안전교육 의무법령 현황

## 31 초등 구강검사를 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질의**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회신** 2015-05-2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학교의 장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구강검

진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구강검진기관 중에서 학교와 검진기관 간 계약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 또는 학생이 희망하는 검진기관 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 학생검진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32 “메르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 질의

지금이라도 위기상황 격상하고 학교휴교와 외출 자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더 큰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환자 수 늘고 의료진과 시설부족이 오면 정말 견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플은 치사율0.07%였지만 3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의 건강한 사람의 치사율은 8%라고 하지만, 현대인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몇 프로 일까요? 학생들 안전하대구요? 비염, 천식 있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 보다 많습니다. 40살이나 먹는다는 치료약 어린이한테 안전하다고 확인 하실 수 있습니까? 부디 국민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귀하게 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상황 격상이 어려우면 휴교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방학 일수를 조정한다면, 수업일수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초등, 유치원만이라도 휴교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방법이 없는 한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 아닌가요? 복불복 게임판에 아이들을 올려놓는 거 같아 부모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막연한 희망이 아닌 진실된 정보로 심도 있는 대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신 2015-06-2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감독기관의 장은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내 메르스 발생에 따라 각급학교 지역사정에 따라 휴업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의 휴업령에 따라 집단 휴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메르스 환자발생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환자 발생은 없는 상태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 소독 실시, 마스크와 체온계 구입을 위한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메르스 발생 양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3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자퇴일 변경 가능 여부

#### 질의

본교 학생이 2014년 7월 31일자로 숙려기간을 마치고 2014년 8월 8일자로 자퇴를 하였는데 검정고시 접수가 2015년 2월 3일까지로,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자퇴일로 6개월 이전' 이므로 이학생은 5일이 부족한데 검정고시를 응시를 위해 자퇴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5-01-2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및 자퇴일 변경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퇴학일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 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후 단기간 내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자칫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검정고시는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공고 등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므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시험일정 및 자퇴일자 변경 여부 등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3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중위소득, 중복지급 등)

#### 질의

1. 교육비지원대상자 경우 현재 법정 한부모130%(216만원)는 내외까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위 소득으로 변경 되는 경우 211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갑니다. 216~211만원의 경우 대상에서 탈락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중위 소득에도 법정 한부모라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2. 교육급여 지급 내용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교 방과 후 수강권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회신** 2015-05-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비지원 사업 관련 중위소득제도 도입에 있어, 중위소득 50%기준은 교육급여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 (2015.6.30.이전) 최저생계비 100% = 167만 원→(2015.7.1.이후) 중위소득 50% = 211만원 현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기준(최저생계비 130% = 217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는 교육비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교육비지원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211만 원) 이하인 경우 이와 별도로 교육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교육급여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교육비지원 대상자라면 초등학생인 경우 부교재비, 중학생인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인 경우 학용품비·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35 교육비 심사기준에 대하여

**질의**

작년에 교육비 지원 받아서 올해는 따로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 심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를 웃돈다는 황당한 얘기와 함께 탈락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 지원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까요?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에 화만 날 뿐입니다.

**회신** 2015-05-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비 심사 결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우

선 교육비를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를 작성하고 귀하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집중접수기간(5.13~5.29)에 주민센터를 내방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의 실직 등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망하실 경우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과 같은 가정에 교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6 교육비 자사고 학생에게 지원 여부

### 질의

중3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하여 갑자기 준비를 하고 알아보는 중 사회통합전형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학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학은 가능하나 교육비지원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교육청, 동사무서로 상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부모 가정으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그 당시 제가 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셨기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더욱 아시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에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중학교 재학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혜택에 제외되었습니다. 자사고에 다니게 되는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학비를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해야하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2014-11-24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4대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을 보유한 경우와 시·

군·청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 해 동안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 학년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고 있으니 3월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15년 기준 4인가구 211만 원 이하(3인가구 172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일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시면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곤란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의 실직 등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희망하실 경우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7

## 다문화 학생 학부모의 중학교 입학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 질의

다문화 학생 학부모입니다. 모국에서 12학기 이상 수료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5-04-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다문화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75조에 의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 장이나 중학교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동법 시행령 제 98조2에 의거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둔 학력심의회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중학교 학력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입학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에 성인들을 위해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문해기관’과 ‘방송중·고’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통해 성인들의 학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3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 질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4급 이하의 정원을 책정 및 운영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하나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4-09-1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 관장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사항들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4급(상당) 이상의 정원 책정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39 조교 공무원 상당계급 문제점

### 질의

OO대학교 조교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이 분의 경력을 합산하였는데 상당계급부분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에 의하면 특정직교육공무원 조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분은 몇 급 상당으로 보고 경력산정을 처리해야 할까요?

**회신** 2014-10-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26조에 의한 조교일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행부 예규 제104호, 2014.8.8)의 (별표2) 호봉확정을 위한 공무원경력 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보면 6호봉이하는 7급, 7~10호봉은 6급, 11~16호봉은 5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40

## 학생 피해를 볼모로 하는 급식파업 반대

## 질의

조리, 세척, 청소 전 업무를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이 4시간~5시간정도 되고 그 외 3~4시간은 중간휴식과 업무종료 후 수면을 포함한 절대 휴식시간입니다. (무기계약 이전에는 오후 2~3시 이전에 퇴근을 하셨었지요.) 동종 급식업체와 비교한다면 임금, 근로환경 근로시간 등이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한다면 육체적 노동강도가 센 편이고, 대신 임용문턱이 거의 없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처우 및 임금을 임용과정이나 자격요건, 업무형태가 다른 교사나 공무원과 비교하고 파업할것이 아니라, 유사 업종에 근로자의 비교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회신

2014-11-2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학생들의 교육지원 및 학교급식의 차질을 주는 학교회계직원의 총파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와 면담 (장관)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총파업(11월 20~21일)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 차질 등으로 일선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등과의 대화를 통하여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급식 차질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1

## 2013.12.12. 직종개편에 의한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 호봉 재획정

## 질의

직종개편으로 별정7급상당의 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로 전환 후 임용 전에 취득한 유사경력(대학원 학위) 합산신청서를 제출함.

1. 2011.11.1. 신규채용 지방별정직 7급상당 5호봉(4년0월26일), <임용 전 준경력 10

- 할(2년3월25일)과 국립대 문헌정보학과 조교 경력 10할(1년9월1일)》
2. 2011.11.1.~2013.12.11.(2년11월11일) 별정직7급(8호봉0월) 근무
  3. 2013.12.12.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로 전환되어 호봉재획정: 연구직 재획정(7호봉0월)
  4. 2014.12.12.~2014.9.30.(0년9월19일) 지방기록연구사(전담직위) 근무
  5. 2014.9월말 현재 공무원 유사경력 합산신청서 제출<유사경력: 임용 전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학칙 수업연한 5학기)>
- Q : 2014.10.1.기준으로 어떤안이 가장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1안 현황3의 지방기록연구사 호봉+연구사 근무경력+석사 = 10호봉 3월<기록연구사 호봉(7호봉0월), 연구사경력 10할(0년9월19일), 석사 10할(2년6월0일)>
- 2안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에 의거 총경력(10년3월26일) +1 = 11호봉 3월 <임용전군경력 : 10할(2년3월25일), 임용전경력(조교) : 10할(1년9월1일), 공무원경력 : (동일한 연구지도 분야에서 특정직으로 상근한 경력), 별정직7급경력 : 10할(2년11월11일), 연구사경력 : 10할(0년9월19일), 석사 : 10할(2년6월0일)>
- 3안 총경력(9년7월13일)+1 = 10호봉 7월<임용전군경력 : 10할(2년3월25일), 임용전경력(조교) : 6할(1년0월18일), 기타공무원경력으로 인정, 별정직7급경력 : 10할(2년11월11일), 연구사경력: 10할(0년9월19일), 석사: 10할(2년6월0일)>

**회신** 2014-12-2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2013.12.12자로 별정직 7급 상당에서 기록연구사로 전직한 후,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호봉 재 획정이 필요한 경우, 이미 직종개편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호봉이 재 획정 되었으므로 이번 사안은 질의하신 세 가지의 안 중  
 현황3의 지방기록연구사 호봉+연구사 근무경력+석사 = 10호봉 3월<기록연구사 호봉(7호봉0월), 연구사경력: 10할(0년9월19일), 석사: 10할(2년6월0일)>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2** 직급별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제의 관계

**질의**

현재 교육청 산하 기능직렬이 2013.12.12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직급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한 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직렬의 직급별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늘려줘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1.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합니다.
2. 기능직에서 일반직렬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원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가 총액인건비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4-12-3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 기구·인력 운영의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43 시설관리 업무범위에 인쇄업무가 포함되는지?

**질의**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이 학교 인쇄업무(시험지, 가정통신문, 학력평가지, 수업자료 등)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지방교육청의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소속 학교 업무분장상 “인쇄업무”라고 표시된 경우제외)

**회신** 2015-01-1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6호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는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및 조례규칙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각종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판단여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44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여부

질의

2013.12.12. 직종 개편 전에 기능8급에서 의원면직하고 전환 시험을 거쳐 일반직 9급으로 신규임용 된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ㄱ)1998.04.01.~2005.03.31. : 기능9급 지방사무원 (ㄴ)2005.04.01.~2011.12.31. (근속승진) :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기능8급 경력 : 6년 9월), (ㄷ)2010.04.01. : 상위직급대우(7급대우), (ㄹ)2012.01.01. : 의원면직(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ㅁ)2012.01.01. : 지방교육행정서기보(경력경쟁채용), (ㅂ)2012.07.01. : 시보해제(지방교육행정서기보), (ㅅ)2013.07.01. : 일반승진(지방교육행정서기), (ㅇ) 2015.04.01. : 현재 지방교육행정서기(교육행정8급 경력 : 1년 9월), 2015.04.01. 현재 종전 기능 8급 경력(6년 9월)과 일반직 8급 경력(1년 9월)을 합산하면 8년 6월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은 해당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여야만 발령이 가능한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자의 경우는 일반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기능직 경력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직 신규임용 시점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되어야만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위의 경우 2015.07.01.자로 종전 기능8급 경력을 합산하여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 또는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3-3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동규정 33조의2에 의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신규 임용(경력경쟁채용) 당시에 기능9급 및 기능8급 경력이 모두 적용되었으나, 최소승진연수 부족으로 인해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발령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최소승진연수 충족과 동시에 승진(지방교육행정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7급 근속승진 및 7급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서는 최소승진연수(1년6개월)를 충족하고 다음의 재직기간을 근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대우공무원: 5년 이상, 2) 근속승진: 7년 6개월 이상

## 45

## 강임 전직자가 근속승진 후 일반승진할 때 근무평정점 반영

## 질의

2013.8.6. 교육행정6급에서 교육행정7급으로 강임하여 전입은 사람이 2014.3.1 교육행정6급으로 근속승진 하였습니다. 전입(강임) 전 6급 근무평정을 세번(2012.6, 2012.12, 2013.6), 전입 후 7급 근무평정을 한번(2013.12), 6급 근속승진 이후 근무평정을 두번(2014.6, 2014.12) 했습니다.

2015.1.31 순위명부작성 시 (\*6급 순위명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3년)

평 정 일 | 점수 =====

2012.06 | 00.0 -----

(1)2012.12 | 00.0 -----

(2)2013.06 | 00.0 -----

(3)2013.12 | 없음 (7급 기간)-----

(4)2014.06 | 00.0 -----

(5)2014.12 | 00.0 -----

(6)7급평정점(4)는 0으로 보아 강임전 6급평정점(3)을 반영한 최종 평정점 계산방법을  $[(1)+(2)/2*33%]+[(3)+0/1*33%]+[(5)+(6)/2*33%]$ 와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5-05-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 제5항에 의하면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별로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고 아울러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단위 기간(2013년 12월말 평정)은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귀 기관의 경우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기간이 3년이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6월말, 2012년 12월말 / 2013년 6월말, 2013년 12월말 / 2014년 6월말, 2014년 12월말이 반영 되며 그 중 2013년 12월말은 다른 직급의 평정이므로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점수 산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의하신 방법과 같이

- 2012.06 | 00.0 -----
- (1) 2012.12 | 00.0 -----
- (2) 2013.06 | 00.0 -----
- (3) 2013.12 | 없음 (7급 기간)-----
- (4) 2014.06 | 00.0 -----
- (5) 2014.12 | 00.0 -----
- (6)  $[(1)+(2)/2*33%]+[(3)+0/1*33%]+[(5)+(6)/2*33%]$  근무성적 평정점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46 사립학교 일반직 채용의 일반사기업 경력 산정에 대하여

### 질의

사립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판단이 서질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직 8급/6급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일반사기업(부림저축은행)의 경력을 몇%로 산정을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찾아보았지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회신 2015-05-2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르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10할이내)’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르면,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자격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호봉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분야 여부 등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민원인과 통화한 결과 위 임용예정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변호사 자격증) 및 관련학위(교육학 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임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 47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가점평정

## 질의

경력평정담당자입니다.

1.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관해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경력평정)제1항 제2호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 된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 경력 : 60퍼센트, 나.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 60퍼센트, 우리 지방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2015.2.1자로 사무운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직 임용된 분들이 있습니다. 2007.1.1. : 기능직 기능8급 사무실무원, 2013.1.1. : 기능직 기능7급 사무실무원, 2013.12.12.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7급(직종개편), 2015.2.1. : 교육행정7급으로 전직임용1) 승진소요년수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6급은 6급때 경력이 일부 인정되지만 7급이하는 전직임용한 날로부터 2015.2.1자로 승진소요년수 산입을 시작하는게 맞습니까? 다. 경력평정 : 갑설 을설 어느것이 맞나요? 가) 갑설 : 교육행정7급

- 갑경력, 사무운영7급 병경력, 기능7급 사무 병경력 인정 나) 을설 : 교육행정7급 갑경력, 사무운영7급 병경력, 기능7급 사무 병경력, 기능8급 사무 정경력 인정
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5] 자격증 임용권자가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임용권자가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여기에서 해당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계급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육청 교육행정의 자격증 경우 6,7급 사회복지사 1급 8,9급 사회복지사 2급을 인정합니다. 그럼 교육행정6급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격증가점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바로 아래 하위계급이므로 교육 행정7급시 사회복지사 2급 가점 인정, 교육행정6급은 미인정, (을설) 분류는 6,7급, 8,9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행정6,7급 둘 다 사회복지사 2급 가점 인정

**회신** 2015-06-2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1.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3조에 의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 임용된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전직임용한 날부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이 시작됩니다.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후 (2013.12.12. 이후) 사무운영8급 에서 사무운영7급으로 승진된 경우는 같은 “일반직 내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되어 사무운영7급 경력 (병경력)과 더불어 사무운영8급 경력(정경력)도 인정됩니다.
3.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 특례규정 시행 전 기능사무8급에서 기능사무7급으로 승진되었고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사무운영 7급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전직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직 7급으로 임용된바 이런 경우 기능사무7급 및 사무운영7급 경력(병경력)은 특례규정에 의거 인정 되지만 기능사무8급 경력은 기능직과 일반직 간에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임용권자가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서 바로 아래 하위계급은 예컨대 6급인 경우 7급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48 국립학교 근무 경력 인정 여부

### 질의

경력인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립학교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전에 있던 학교근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데 현재 제가 다니는 국립학교는 전에 다니던 학교근무 3년5개월을 경력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근속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공립학교 근무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매월 6만원 차액이 납니다. 한 달로 볼때 금액이 적지만 일 년으로 본다면 큰 돈입니다. 저도 전에 학교근무 경력인정 받아 공립학교 조리종사원과 근속수당을 똑같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2015-06-2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립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유사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국립학교의 경우 동종유사직종인 국립학교간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안사항으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49 학교운동을 위한 자문비용의 지출 : 교비회계

### 질의

교비회계의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제1호.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운영사항에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 지출된 비용의 경우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지출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 2014-08-0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사립학교 교비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학교운영과 관련한 변호사 자문 비용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의 지출 가능여부는, 인건비는 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0 명시이월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시기

### 질의

2014년에 명시이월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학교로 교부했으나, 학교가 민원 등의 이유로 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은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올해 교부된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반드시 올해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4-08-07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보조사업이 종료 된 때와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 목적 내지 보조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정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민원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 목적(사유)의 소멸여부,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의하여 정산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51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학교운영위원 경조사 경비 지급 가능 여부

### 질의

학교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의 지급대상자 범위에 학교 운영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인 경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보면 운영위원회가 지방의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집행하는 업무 추진비에서 운영위원 경조사 경비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08-2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학교장 등)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에 따라 교육감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학교회계 재정 운영 현황과 학교장의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지급항목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5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령 해석 의뢰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해석을 달리하는 견해에 대한 법령해석 의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외국어 관련사항이 문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특히 영어)의 경우 현재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의 경우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조례로 규정하여도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조례규정의 상위법 위반에 대한 교육부 담당부서의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2014-09-1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법제처에서는(법령해석례, 10-0442)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을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특히 영어)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 학교교육여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보조사업의 대상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규정 여부도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전제가 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53 학교용지 부담금 1

### 질의

당 조합은 296세대의 단지이며 소형주택 34세대일반분양 93세대조합원분양 169세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하여 「특례법」 제5조 4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중 2호 항목의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 조합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 2014-09-1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관할 지자체장(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므로, 관할청(서울시청)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학교용지법’ 주관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제2호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여부는 시·도지사 “재량 사항”으로서 같은 항의 제1호, 3호, 4호와 달리,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동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발사업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학생수용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관할 지자체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54 학교용지 부담금 2

### 질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동주택과 학교를 같이 사업진행 중입니다. 사업주가 공동주택 분양 시 0.8%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업지 내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감면되는 것이 맞는지요?
2. 학교용지 기부채납 시 공동주택 분양금의 0.4%를 사업주가 교육청에서 돌려 받는게 맞나요?
3. 사업주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직접 운영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납부대상인가요? 아님 감면 대상인가요?

### 회신

2015-06-26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법」 제3조 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 4항 1호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학교용지의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용지법」 제5조 4항 1호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공동주택 분양금 0.8% 전액을 환급해야 하나 교육청을 통해 납부한 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지만 납부하지도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학교용지법」 제1조에서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수요에 한정하여 학교용지의 개발의무와 학교용지의 확보 및 용지부담금의 전출 등과 관련한 학교용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설립을 통해 교육감의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설립 수요를 해소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달성한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라면 통학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와 관련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육감의 학생배치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발에 따른 설립수요 해소와 관련이 없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설립되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직접 운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보아야하며, 다만 사업주의 학교설립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가 해소된 것으로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법령검토 의뢰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의 2.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의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내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등) 과정(예,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교 과정 등)과 학교의 음악특기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연합오케스트라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등)과정과 학생연합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서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4-10-0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법제처에서는(법령해석례, 10-0442)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을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및 학생연합 오케스트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 학교교육여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외국어 기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 3호에 의한 과정 신설 여부 및 보조사업의 대상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6 재개발지구 학교 용지 지정 후 매입 시기

**질의**

초등학교를 다니게 될 아이를 위해 OO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학교부지를 요청했고, 부지를 내놓았으니 당연히 학교가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 지어져 가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사주어야 그 돈으로 건설사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내년엔 완공되는데 학교는 몇 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면 시공사에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불하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사줄 때까지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애시당초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닌지요?

**회신** 2014-10-1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시·도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가 조성(확보)된 이후라도 실제 학교 신설 여부와 시기는 시·도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학생수용계획)과 교원수급,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즉, 「학교용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도가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후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시·도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매수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학생배치계획과 예산상황,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매입시기, 매입방법, 조건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산지법 판례 2006가합14090, 헌재결정례 2008헌바70) 참고 바라며, 시·도교육청 학교신설 등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건설, 주택, 교육, 학생 수용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학교 신설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OO지구는 지난 “20△△년도 제△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학교 분산 배치 및 개발추이에 따라 검토”를 사유로 재검토 결정된 건으로서, 현재 분양 완료된 지역의 학생유발 예상만으로는 별도의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OO구역 분양에 따른 학생유발, 인근 학교 수용 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교 신설 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 판단됩니다. OO구역 입주에 맞춰 학교가 신설되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 드리며, 향후 OO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요청 시에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신설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57 원문정보공개 의문

### 질의

원문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록공개여부는 거의 공개로 하는 것이 확실한데 학교기관에서 에듀파인을 이용한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에 대한 결재 시에 회계문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한다면, 몇 호의 사유로 제한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학교현장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회신** 2014-10-2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원문정보공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법’(약칭)을 안전행정부에서 개정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공공기관)는 2015년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가 의무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은 ‘정보공개법’(약칭) 제3조, 제8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며 8조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는 공공기록물법(약칭)에 따라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록관에 지도·감독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서별 공개여부 및 자세한 사항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에 문의바랍니다.

## 58 교육부 청소년수련원 인·허가

**질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폐교인 ‘OO 초등학교’를 교육시설(청소년 수련원)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소년진흥 활동 진흥법」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조리 시설 숙박 인원 00%를 일시에 급식 가능해야 한다. 부산 교육청은 청소년 수련원을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수 시설인 피교육생을 위한 숙박과 조리시설을 하고자했으나, 공유 재산 대부계약 특수조건인 제3조 2항의 불특정 다수의 숙박 및 조리를 할 수 없음을 근거로 불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2012년 9월 18일에 수련원 임대차 계약 이행 촉구 및 민원 질의서를 교육청에 보냈으며 질의 내용) 9번 항에 ‘피교육생 숙박을 허용치 않고 있는 교육청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며, 마사 설치를 허용치 않고 있어 승마 교실 운영 허가 조

건인 체험 승마장 등록조차 못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본인과의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해주시바랍니다.’라고 질의한 바 부산 교육청 답변)대부계약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특수조건 제3조2항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숙박 및 조리를 할 수 없음’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폐교 대부사업 시 외부인들을 위한 숙박 및 조리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대부계약서 특수조건에 제2조 제1항에 의거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 할 것임. 라고 하였습니다.

② 2012년 11월 14일 사업 추진 세부 계획서에 제출하였습니다.(마사 설치 도면 및 숙박 시설 설치 도면 포함), 교육청은 심의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③ 2013년 2월 20일 사업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여 탄원서2를 제출하였으며, 탄원 내용 가항 1목에 ‘폐교인 OO초등학교 대부 계약 시 대부 목적인 교육시설로서 ‘청소년 수련원’ 으로 사업 실시를 하고자하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장 10조 1항 나목 의거, 청소년 수련원의 필수 시설인 피교육생을 위한 ‘숙박 및 조리 시설’ 을 하고자 하나, 교육청이 특수 계약 조건 ‘제 3조 2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숙박 및 조리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문구의 해석상 차이로 사업 시행 불가로 계약 수정 요청. ‘이 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교육청 답변)2013년 3월 13일 답변서에 “귀하께서 2013.2.20.일에 제출하신 탄원서2에 대하여 검토한 바, 대부계약 특수조건에도 숙박 및 조리가 불가하다고 명기되었다, 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조 나항에 근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특수조건 제3조2항 불특정 다수인의 숙박과 조리의 해석이 피교육생을 위한조건이 아니며, 일반인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교육생만을 위해서 허용하라 요청했으나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시 교육청은 인허가 관련하여 교육청이 허용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 했으며, 계약서상에도 인허가를 해당 관청과의 문제로 시설기준등에 못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부산 교육청은 법적으로 보장 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시설 기준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 수련원인 OO의 OO 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은 말을 위한 마사(7두 마방) 설치를 하였으며, 숙박과 조리 시설 시설신고를 하여 2012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OO도 최우수사업체로 인정 되었습니다. OOOO수련원/인재개발원 등록번호 △△△-△△-△△△△△숙박인원 (중학생 245 초등학생 270명),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대표 OOO, 2011년 6월 21일-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OOOO 수련원(승마장)업종 승마장 2011년 12월 19일 신고하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피교육생의 조리를 금하였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을 금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조리 시설을 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OO초등학교도 폐교 전 조리 시설이 이미 만들

어 저 있고 사용되어 왔음에도 위험하다는 사유를 들어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숙박 또한 많은 폐교가 시설을 하여 수련원 운영 중에 있으며, 동일 지역인 부산광역시 금련산 수련원에도 숙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 기준을 알고 있었고, 시설을 불허하여 사업을 진행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사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으로 보장 되고 권장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오니 속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폐교 활용 촉진법에 근거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의 필수 시설인 폐교 내 피교육생을 위한 숙박과 조리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1) 부산교육청이 청소년 수련원으로 대부계약을 한 후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필수 시설인 숙박을 허용치 않다는 행정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요?
  - 2) 청소년 활동법상 필수 시설인 조리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폐교전 피교육생들을 위해서 사용 되었던 조리시설을 청소년 수련원의 피교육생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통보인지요?
  - 3) 조리 시설 사용불가 행정 통보 사유가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적법한 행정 지시인지요?
  - 4) ‘청소년 수련원’ 필수시설을 위한 피교육생 숙박 및 조리 시설이 대부 계약 특수조건 불특정다수의 숙박 및 조리는 할 수 없음을 피교육생을 위한 숙박과 조리 시설 금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 행위인지요?
  - 5) 전국의 많은 폐교가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의 대부 계약서에도 “ 특수 계약 조건 ‘제 3조 2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숙박 및 조리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숙박과 조리에 관련하여 유사 동일 문구가 있는지 조사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회신** 2014-11-17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계약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초 계약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자가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폐교재산을 대부하였다면, 당초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9

**통학버스 운영비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교육부의 지침(2012.7.)에는 통학버스 운영비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경남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회계의 부족분을 발전기금을 모금해 별충할 수 없다’는 명시된 기준에 의거, 통학버스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통학버스 운영비가 학교회계에 잡혀있지 않다면 그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침에는 ‘학생복지’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저는 왜 통학버스운영비가 학교회계사항인가?”를 물었는데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이상은 학교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장학금제도도 운영하는 이상은 학교회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학부모입니다만 농촌시골 소규모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고 통학버스 운영에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과 통학버스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질의를 드립니다. 요컨대 학교발전기금 지침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영비는 발전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2014-12-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학교)이 충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요령에서는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 OO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운영은 학생의 등·하교에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교육감(학교)가 운영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운영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O초등학교 학교운영과 예산편성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김해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교육청과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60

##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 교육경비 지원 여부

##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5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1.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육특기자 합숙소, 체육부 전용버스 등)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지원이 된다면 같은 규정 2조의 몇 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회신

2015-02-1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1) 법제처[유권해석(10-0442) : 2010.12.23]에서는 법제처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을 학교 환경 개선 등 시설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합숙소 및 체육부 전용버스 사업 등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2)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

61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

경기도교육청 수원본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비리 횡령 탈세 뇌물 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졸업한 고등학생이며, 인문계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무직상태이고, 본인은 경기도 00시 00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해 안가는 게 있어서 건의조사 부탁드립니다.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니 무슨 1년치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1학년 2학기까지 1,246,410원이 나오니까? 인문계가 무슨 대학교 등록금 수준입니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년까지는 2,400,150원이고, 3학년까지는 2,245,000원입니다. 이거 전교생 400명 전원 곱하면 1억원 넘쳐 나오는 돈입니다. 아니무슨 백 만원 넘게 돈을 냈니까? 고등학교에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십만원 정도 내야 다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정확히 판단 후에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00시 00고등학교 선생님들 돈 비리 탈세 횡령 뇌물 정확히 조사해주십시오. 민원인께서 수업료가 과다하다 주장하시지만, 교육부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등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없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적정 규모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사안이고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니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인 시도 조례를 참조바랍니다. 이따위로 답변 합니까? 교육부에서 정확히 조사하여 지금 저 금액 말도 안되고 횡령 비리 탈세입니다.

회신

2015-01-2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졸업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지방 조례인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액을 정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수업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세입으로 징수하여 경기도의회에 예·결산 심의를 받아 교직원 인건비, 교육운영,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 각종 사업에 지출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납부하신 수업료는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내역은 학교알리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62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미정에 대하여

### 질의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지구에 2016년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초등학교 부지와 설립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연한 기회로 2014년 설립 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설립이 미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500여 세대가 입주시작하게 되고, 2016~2018년 사이에 2천여 세대가 넘는 인구가 유입될 듯 싶은데 학부모 입장으로는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남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통학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교생 포화에 이르면 더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이 불가피 할 듯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원을 드립니다. 4월 정도에 시행될 오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심사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2015-03-1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설립, 이전 및 폐지는 교육자치제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교 위치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남 순천지역의 학교 설립 건은 오는 4월에 열리게 될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전남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다시 검토 될 예정이며, 우리부에서는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3 학교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재질문

### 질의

학교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관련 본 조합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

나 교육부 답변에 위법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며, 본 조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설명을 통하여 답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답변을 고수할 경우 실무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감사원 고발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교육부 답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의 입장)

1.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과 사전에 합의한다는 의미가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이 출납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장 원인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학교장이 협조적으로 조치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국고금관리법」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나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이 해야 할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겸직해도 된다는 의미라면 「국고금관리법」에 반하기 때문에 입법행위의 위법성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회계규칙에 규정된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항의 입법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교육부 답변)그러므로, 학교장은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분임경리관(학교장)과 지출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행정실장(또는 경리담당주무자)은 회계관계직원으로서 품의와 지출원인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합의 입장)각 시·도교육청 회계규칙을 살펴보면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상에서 재무관을 의미하고, 지출원은 「국고금관리법」 상에서 지출관을 의미합니다. 출납원은 「국고금관리법」 상에서 출납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용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무관과 지출관, 재무관과 출납공무원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원과 출납원은 경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리관과 지출원, 경리관과 출납원의 겸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출납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실장이 경리관이 수행하는 지출원인행위(계약) 실무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용어의 혼동으로 인하여 행정실장이 지출원인행위(계약) 실무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 관련조항에는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각 지방 조례 및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고금관리법」의 효력에 대한 예외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학교 회계 사항에 대한 조례와 규칙

은 상위법인 「국고금관리법」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 회계규칙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별표1]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실장은 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출원과 출납원의 겸직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리관과 지출원, 경리관과 출납원의 겸직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 회계규칙도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이 원인행위와 지출결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한 답변입니다. 본 조항은 각급 학교 예산집행의 위법성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학교 예산이 도급경비(현 관서운영경비) 형태로 지급되다가 2000년대초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 조항이 신설되면서 학교 예산 및 회계 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는 출납공무원이 원인행위 겸직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 조항 신설 전에는 도급경비 형태였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원인행위 겸직이 가능했고, 신설 이후에는 원인행위 겸직이 불가능했으나 그 당시 시설예산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조무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실장이 시설예산 원인행위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에 시설예산 원인행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본 조항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설예산 원인행위 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회계관련 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학교 예산집행 법규 관련사항을 정리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적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과 사전에 합의한다는 의미가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이 출납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장 원인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학교장이 협조적으로 조치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이 해야 할 지출원인 행위 업무를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겸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수행하는 분임경리관의 업무를 출납원인 행정실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실장이 분임경리관의 업무와 출납원의 업무를 겸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위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는 답변을 금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본 조합에서 법적 근거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답변을 고수할 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해 감사원 고발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교육부는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회신** 2015-04-2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학교회계에 적용하고자 하시지만, 공립학교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시·도(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법률은 학교회계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와 다른 성격의 기관입니다. 두 법률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시·도(공)립학교회계 규칙”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회계규칙 조문에 계약은 지방계약법(약칭),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합의에 대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의 정의와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며, 학교장이 지출원인행위(계약)을 할 때 문제점(계약방법, 예산 등)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겸직여부의 가부(可否)를 문의를 하시는데 규칙에서 가부를 정의하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으며, 행정실장이 원인행위 시 합의조항에 따라 결재선 참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장이 행하여 하며, 부득이한 직무대행은 교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행위에 대한 위임전결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종결재자의 역할을 정의한 것이지, 중간 결재선(검토, 협조)는 학교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학교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위임된 사항으로 정책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은 각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광주의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중학교의 재정 중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광주지방교육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중학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안학교와는 다릅니다. 국가에서 그 교육 과정을 인정한 중학교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법 아침 등교시간 조정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교육 강조로 인하여 교내 사제간, 급우간 관계가 좋아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될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지금의 ○○중학교를 원합니다.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본 권리도 주장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어느 곳에서도 ○○중학교는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한 곳 있는 이 학교만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회신

2015-05-04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보통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린이집 누리과정 안정화 확보

질의

대한민국 자녀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망각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의미를 일깨워 주도록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가 의미를 유지하여 대한민국 자녀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무행정 등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회신

2015-05-2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전체 소요재원은 2015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교육청별 소요액 전액(3.9조원)을 반영하여 이미 지원한 바 있으며, 다만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2.7조원)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고 목적예비비(5,064억원)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1조원)을 통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4장

고등교육



## 1

**고교 선배정으로 전학할 수 밖에 없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요청****질의**

선배정 신청 기간은 2/13~2/17일이며, 신청 조건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 일 현재 OO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월 25일에 OO으로 이사하였고 (등본 제출 가능) 위의 기간에는 고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교육당국의 안내에 따라 '입학 후 당일 전학'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월 전학에 대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하기는 하지만 저희 경우처럼 신청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된 사례까지는 모두 커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안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학 후 당일 전학'의 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 저희의 경우에는 국가가 반드시 구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4-08-0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형으로, 특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동 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전형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 전형이며, 조건을 설정할 경우 전형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학생 선발에 타당하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역의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대학 및 고교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와 같은 동 전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 고교에서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녀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도 검토했으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할 경우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엄격히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외를 허용할 경우, 입학일 당일 바로 전학을 한 학생까지 허용할지, 입학일부터 하루 정도를 허용할지, 일주일을 허용할지, 한달을 허용할지 이런 추가적인 혼란도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녀와 같은 사례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당 사항을 허용할 경우 그로 인한 파급 사례는 더 많아질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형의 취지와 다른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대학 입시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반영

### 질의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탐구영역에 직업탐구를 응시하는데 일부 대학에서 직업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하여 그 대학(제가 전화한 곳은 OO교육대학이었습니다.)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회나 과학탐구는 2과목을 시험을 보고 직업탐구는 1과목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직업탐구도 1과목이 아닌 2과목을 공부하고 2과목시험은 보지만 결과만 통합해서 1과목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학 측에 말했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입시부터라도 논의해서 반영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이미 2016입시는 결정이 되어 바꿀 수 없다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측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바꿀 수 없다 하였습니다.

1. 대학 측에서 직업탐구를 2과목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한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조차 넣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주십시오.
2. 직업탐구가 2과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대학 측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 과목을 따로 사회나 과학처럼 2과목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학교에서 간호학과 특성화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처음에는 직업탐구를 한과목 밖에 보지 않아서 불합격처리 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대학 측에 연락하여 다시 합격처리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학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 그 대학 특성화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데 직업탐구제외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직업탐구를 1과목으로 처리함으로 많은 불리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주교대에서는 2017입시에서라도 논의라도 하게 직업탐구가 2과목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 회신 2014-08-2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직업탐구 영역과 관련하여 대학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안내를 하였고,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대학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안내를 하였습니다. 학생의 선발에서 수능 시험 영역의 지정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사항을 OO교대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3

## 대입 수시 발표 지연으로 수능 원서 환불 불가능에 대한 의견

## 질의

수능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는 되지 않고 수시합격을 한 경우에만 접수비의 60%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수능 환불기간은 11월 17일부터 5일간만 신청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수시합격발표는 12월 6일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늦게 발표 나는 학교 학생들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대상자로 수시합격자로 정했다면 최종 수시발표 끝나고 환불을 해주던지 평가원이 정한 그 기한 내에만 환불을 해준다면 1차 합격하고 최종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도 환불을 해주던지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든 학교를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하는데 너무 행정편의위주 나아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들과 적어도 일정 교류도 하지 않고 본인들 위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 재고 해야하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한 학부모로서 사교육비 절감하겠다고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부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명의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비용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건의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 회신

2014-11-0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대입의 수시특별전형 발표 지연으로 수능원서 환불에 대한 의견 감사합니다. 민원인께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000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 일자를 앞당겨 지난 10월 30일(목)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000대학교 입학관리팀 02-△△△-△△△△) 00대학교의 특별전형 일자에 대해서는 불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민원인께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원서로 접수비 환불일정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00대학교 답변 1부.

4

○○대학교 입시전형에서 제2외국어 미선택시 불합격 처리

질의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전형 지역균형전형으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최저등급기준이 2등급 3개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문과외의 경우 국영수사탐 이렇게 4개 영역만 응시하면 되는데, ○○대의 경우 사탐에서의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학생이 수능시험 선택을 할 때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능을 보기 전이니 수능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신

2014-11-1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수능원서 접수 시 제2외국어 미 선택으로 인해 우리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변경기간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

○○대학교의 부당한 수시 추가합격과 위 학교의 태도 문제

질의

○○대학교는 지난 11일 수시 1차 추가합격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추가합격이 언제 발표가 날 것이다 혹은 몇 차까지 할 것이다라는 공지를 띄우지 않았고 저 날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공지도 띄우지 않은 채 “추가합격자 발표

는 1차만 시행합니다. 최초합격자 발표 시 부여된 예비순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라는 두 마디만 적고 추가합격을 일방적으로 끝냈습니다. 심지어 학교의 OO캠퍼스 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후, OO대학교는 수험생들의 왜 이런식으로 추가합격을 정했나 라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입학처에 전화했을 때 도 그들은 그저 “네” “네” 하고 전화를 끊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추가합격을 학교가 정해서 몇차까지 해야겠다라고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위 학교는 미리 공지를 했거나 혹은 예비번호를 부여할 때 공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 두 줄만의 말만 띄우고 어떠한 이유도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4-12-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각 대학이 입시요강에 탑재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OO대학교에서는 “추가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발표하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고 명시한 바 대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되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명대학교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OO대학교 답변 1부.

## 6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요청

**질의**

학생이 OO대 수시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정시 대비 중 OO대 충원 합격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등록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예비번호도 받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정시는 물론이고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신** 2014-12-3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 및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시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정시전형 지원을 허용할 경우, 수시전형 합격 후 수능 성적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는 다수의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동 모집단위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진학하지도 않을 학생으로 인하여 희망 대학에 대한 진학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진학을 포기하고 다시 정시전형에 지원을 원하는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 정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모든 사람의 희망을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 수시합격통보 후 등록동의 확인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처리

**질의**

OO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시충원 통보를 받고 OO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동의를 하는 것으로 합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등록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등록동의에 더 확인 클릭을 해야 하는데 더 자세히 보지 못해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시 합격 취소가 되어 버린 걸 OO대학교에 전화로 확인하여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등록동의절차 최종클릭을 하지 않아 불합격으로 처리 했습니다. 저는 수시지원 하여 OO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생각 가운데 꿈에 부풀어 입학준비를 하는 가운데 충격을 겪는 상황에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귀 기관에서 저의 인생이 달린 절박한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OO대학교에 합격처리에 대한 절차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민원드립니다.

**회신** 2014-12-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수시합격통보 후 등록동의 확인과정에서 생긴 불합격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교의 입학전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8 수시합격 미 통보에 대한 의문점

### 질의

이번에 수능을 준비한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12월 22일 오전 정시 지원한 학교로 부터 한 통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학생은 수시합격으로 인하여 정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고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시발표가 지난 지가 언젠데, 합격통보도 못받았는데, 분명 전산오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12월 15일 추가 합격이 된 학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22일 확인한 그날 바로 그 학교 등록부로 전화를 해 등록금 납부하겠노라고 했습니다.

### 회신 2014-12-3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 및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시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정시전형 지원을 허용할 경우, 수시전형 합격 후 수능 성적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는 다수의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동 모집단위에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진학하지도 않을 학생으로 인하여 희망 대학에 대한 진학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진학을 포기하고 다시 정시전형에 지원을 원하는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 정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모든 사람의 희망을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이후 예비합격자에게 기회 부여 요청

### 질의

재수생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 수능에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여 제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군에 OO대 의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예비16번을 받았구요. 그런데 OO대 최종합격자발표가 11일 21시이고, OO대

는 유일하게 등록포기신청 마감 날이 다음날인 12일 18시입니다. 그러니 이중등록자가 발생하여 결국 점수로 봐서 바로 앞 번호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미등록 마감 이후 추가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발생하므로 충원기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2015-02-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정시모집,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2조), 그 전형일정은 대학, 시·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하고 대학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 41조). 대학과 대교협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일 이후에는 합격자 등록포기와 상관없이 예비합격자에 대해 추가로 충원하지 않으므로, 예비합격자의 추가합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녀분이 해당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 정책은 다수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모든 사람의 희망을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중등록은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로,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 10 2016학년 수능 개선 제안

### 질의

이번 기사에 대해서 고3생을 가진 학부모입장에서 민원제출합니다. 작년수능에서 물수능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도 수능을 쉽게 출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능이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져 다들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수생 3수생 4수생 등 n수생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재수를 하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매월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1문제를 틀리면 2,3등급으로 떨어져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항인 그 사항을 알고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회신** 2015-03-2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수능 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현장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기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201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신중히 고려하여 3월말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11 국립대학교 교수 개인행사 참가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 중이신 분이 업무 외로 개인적인 행사(○○일보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를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10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연가 등으로는 참석이 힘든 상황입니다. 행사기간이 8월 13일부터 11월 12일로 예정되어 2학기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이어집니다. 휴직은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2014-07-1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국립대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국립대 교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국립대 교원의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동법 제4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립대 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대학 교원에 대한 감독권은 대학 총장이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사유로 국립대 교원의 휴가 및 휴직사유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대학 조교 연가 일수에 대하여 문의

**질의**

우리대학 조교 복무(연가일수)에 대하여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복무징계

예규”에 보면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학원 수학의 경우도 포함 되어 있어 우리대학 조교가 올해(2학기) 대학원 수학 때문에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교의 계약기간이 다음에 1.31까지로, 다음 해에 1월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다음 해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대상 조교의 다음해 1.1기준 연가일수는 9일입니다.)미리 당겨쓸 수 있는 연가일수는 다음 해 연가일수의 2분의 1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해에 한 달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올해 대학원 수학 때문에 9일의 2분의 1인 4.5 일을 올해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07-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감독권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93호)에는 공무원(교원 및 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함.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④ 일부 경조사외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은 교원이나 연도 중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과조교의 다음해 연가일수(1/2내)를 사용가능한지

**질의**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입니다. 최초임용일은 (2013.05.14-2014.01.31) 이었고, 3 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2014.02.01부터 2015.01.31까지 재계약중인 상태입니다.

임용당시(1호봉)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남은 1학기 수업을 연가 처리하고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가를 미리 쓸수없다는 판단 하에 주의라는 조치(12월)를 받았었고, 12월에는 연가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가일수에서 수업시간 초과된 만큼을 차감하였었습니다.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연가일수는 1년이상 2년미만이기 때문에 9일입니다. 2학기 대학원 수업까지 듣는다면 총 12.75일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3일(1일 공가처리로 건강검진 후에 수업에 참여할 예정)의 연가일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1. 이 경우, 다음해 계약기간이 2015.01.31일까지라는 이유로 연가를 미리 받을 수 없다면 근무상황부에 산정된 연가일수보다 사용한 연가일수가 초과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2. 재계약(2015.02.01-2016.01.31)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최초계약기간동안 연가일수가 산정이 되어 3개월 이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었다면 작년에 받은 주의라는 조치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07-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감독권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93호)에는 공무원(교원 및 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함.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④ 일부 경조사외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은 교원이나 연도 중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대학 교원의 교육경력 환산 문의

### 질의

사립학교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에 총장의 자격기준에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한 경우

1. 교육경력 이라하면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말하는지요?
2. 대학에서 겸임교수 또는 겸임전임강사로 총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자격이 되는지요?
3.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기간을 강의시간에 따라 환산(예 : 3시간은 30%)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되는지요?
4. 대학교에서 겸임전임교수,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환산하여 총 5년의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2014-07-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실적의 환산율은 동 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정해지며 동 규정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붙임 파일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5 일반대학원 연구조교(등록금 면제형태로서 보수 지급) 경력이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

### 질의

1. 일반대학원 연구조교 2년 경력 교육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100% 반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

반대학원에서 연구조교는 보통 그 정기적인 보수를 장학금 지급(등록금 면제)이라는 형태로 한 학기별로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첫 학기 등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게 되어서 첫 학기의 경우는 등록금 400여만원을 계좌로 직접 지불받았으며, 나머지 학기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보수’라는 것이 저와 같은 경우처럼 ‘매 학기’마다 제공되는 ‘장학금(등록금 면제)’ 형태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이같은 연구조교 경력 이 호봉에 반영이 된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2. 현재 국내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해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호봉에 해외 대학원에서의 석사 학위도 연구 경력으로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07-2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며, 동 규정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동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 보수를 지급받은 경력임을 안내해 드리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51호) [별표1]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력기간은 학기 단위로 계산(1학기 : 3.1~8.31/ 2학기 : 9.1~2.28)하며,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6 사립대학교의 비전임교원 자격(연구교수)

**질의**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자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제 17조 겸임교원등),구체적인

자격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 내부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구교수”의 요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물론 많은 대학을 조사해 본바,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수는 애초 교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력으로 사실상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요건이 합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교수를 운용하는 취지가 “교원연구활동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으셨더라도 업무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을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검토 중입니다.

1. 연구교수의 자격을 규정하는 별도의 상위법등이 있는지?
2. 1의 내용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면,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2014-07-3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겸임교원등)에 따른 겸임교원 등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임용 또는 위촉권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 법령에 따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교원 및 겸임교원 등은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관련 법 및 영에서 따르는 조항 중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 및 겸임교원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따라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에 있으며, 대학은 학칙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7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적으로 징수에 대한 조치

### 질의

이미 법원에서 국공립대가 걷는 기성회비는 법적인 징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 주기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학들은 여전히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법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기성회비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어 있어서, 교육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기성회비를 계속 걷는다는 것은 교육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 법원에서 강제 징수 근거가 없다고 함에 불구하고 대학이 걷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 기성회비 논란에 대해서 교육부는 전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대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관자적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부는 저들이 불법적으로 강제 징수(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제적됩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 회신 2014-07-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현재 상고심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 학기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성회회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비회계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8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해당여부

### 질의

OOO도에서 OO미래비전 수립 학술용역 입찰공고사항에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으로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서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기술대학, 7.각종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1항은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해석되는데 「고등교육법」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해석은?

**회신** 2014-11-2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는 제14조 교원과 관련된 규정에 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9 ○○의과학대 학과증설 가능 여부

**질의**

포천에 연고가 있어 ○○의과학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등)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 대학교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과학대의 경우 2010년부터 계속해 매년 신설학과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가능하게 한 법 적용항목은 무엇인지?

2. 앞으로도 OO의과학대 신설학과가 계속 증설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설학과 증설 계획을 일반인으로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2-2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OO의과학대학은 1997년 OOOO의과대학교로 개교하여 2010년 학생정원 110명의 OO의과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뒤, 2011년 210명이 증원된 320명, 2013년 220명이 증원된 540명으로 두 번에 걸쳐 학생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OO의과학대학교의 정원 증원은 특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소재대학으로 동 법 제17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신설 소규모 대학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증원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다만, 총 입학 정원인 540명의 범위에서 자체 정원 조정(타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여 신설 학과를 만드는 등)은 대학이 학칙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대학구분(종합대학, 단과대학 등)

**질의**

4년제 대학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과대학, 종합대학을 구분하였던 거 같은데(대학연혁을 보면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 승격 등) 현재 4년제 대학은 종합대학, 산업대학, 신학대학, 각종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4년제 대학 학교별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구분이 있는지와 신학대학의 경우 종합대학이나 신학대학 한가지로만 구분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기준이나 다른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각 대학별로 구분이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교과부의 4년제 대학구분 기준
2. 현재 대학구분 중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분류 여부 및 기준
3. 신학대학의 분류 기준

**회신** 2015-04-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부의 4년제 대학구분 기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31조(수업연한), 제48조(수업연한)를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분류여부 및 기준은 국립학교설치령 제6조(단과대학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학대학의 분류 기준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법인 지정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3호, 2008.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1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에 속하는지?

**질의**

현재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가 출연금을 지원받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병원, ○○대학교치과병원이 아닌 ○○대학교 자체가 정부출연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5-06-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인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인건비, 정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 받는 고등교육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22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차이?

### 질의

서울대학교가 국립대에서 법인화를 해서사립대가 된 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이 되었습니다. 법인화가 사립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국립대학법인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요?

**회신** 2015-06-2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국립대법인과 사립대의 차이점은 설립주체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국립대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나,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입니다. 다만, 국가가 설립하였으나,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 자율적으로 책임지며,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법인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23 당해 학교법인이사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

OOO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본교 총장 선거에 관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본교 법인 이사가 본교 총장후보 지원서를 제출할 시 본교이사 사임을 하고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총장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
2.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총장후보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 시 총장선출에 본인이 직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2014-08-08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대상으로 총장후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가 총장후보에 지원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인이나 대학의 총장선임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선출에 총장후보직을 지원한 이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4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국내 대학 학력인정

### 질의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국내 대학 학력인정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 (OO대학교)에서는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면 설명하고 어떻게든 받을텐데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 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해서요. 스페인에서 대학원진학을 한 다른 사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하여 서류 인정받고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그런 리스트는 없는데 홈페이지에 해당 페이지가 있나요? 교육부 인정 대학 리스트라든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회신 2014-07-2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 인가발급서 발급은 교육부 홈페이지 접속→왼쪽하단 “교육부 주요사이트” 탭 (화살표) 클릭→중간에 “대학인가확인서 발급”→“발급절차 진행”→“발급”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질의

사립대학 조교로 2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니며, 학사관련 사무'보조'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적용되나요? 예외에 적용된다면 조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를 하여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회신** 2014-07-2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조교를 둘 수 있고,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조교를 두어 교육, 연구, 학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대학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원내용만으로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등교육법’상 ‘조교’인지는 채용관계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 적용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 대학설립기준(교지확보)

### 질의

대학설립 시 교지확보 문의입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4항에 따르면 교지 최소확보기준은 ‘학생 수 1000명이상일시 교사기준면적의 2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3에서 산정하는 교사기준면적을 뜻하는 것인지 현재 혹은 계획하고 있는 대학 내 교사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요.

1. 별표3의 교사기준면적으로 볼 경우 (대학 내 학생정원에 따라 변동폭이 있음)  
ex)  $3000\text{m}^2 \times 2 = 6000\text{m}^2$ (최소 교지확보면적)
2. 대학 내 건물의 연면적으로 볼 경우 (학교의 연면적에 따라 변동폭이 있음)  
ex)  $5000\text{m}^2 \times 2 = 10000\text{m}^2$ (최소 교지확보면적)→ 1항과 2항 중 어떤 것을 별표4에서 말하는 교사기준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 2014-08-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4관련 1,000명 이상인 경우 교지 기준면적인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의미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교사의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27 종교학교 인·허가

**질의**

‘종교학교’라는 카테고리 인·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어떤 [신학교]를 검색했는데, 위치정보에 ‘종교학교’라고 설정이 되어있기에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특별히 인·허가 받는데 있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12-0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종교학교 분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령상” 대학을 종교학교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학교’로 교육부가 인가 또는 허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8 교육부에서 대학교내 교직원 처벌규정

**질의**

교육부에서 OO대 교직원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즉, 대학교의 구성원 중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 중에서 교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 잘못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4-11-2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29 ○○대학교 시위와 총장비리에 대하여

**질의**

내년에 15학번으로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될 고등학생입니다. 매일 ○○대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대 시위와 총장의 비리?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대학입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재학생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껏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곧 입학하게 된다면 제 학교가 될 곳이고, 가만히 있어봐야 내 권리를 누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교육과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교육부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4-12-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교육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현재 당 학교 및 법인에 학내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된다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 조속히 학교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대한 임면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이사회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조속한 해결이 되어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 30 대학재산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 질의

OO광역시에서는 2008년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권역별재활병원 건립 도시로 선정되어 OO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학교법인 OO대학교를 수탁자로 선정, 위·수탁협약서를 체결 후 2012년부터 OO권역재활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OO대학교는 수탁기관 선정 시 OO권역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OO대학교병원에서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는바 이 재산을 광주광역시로 귀속하고자 가능한지요?

### 회신 2014-12-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OO광역시와 학교법인 OO대학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며, OO대학교병원에서 구입한 의료장비 및 비품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및 동 재산이 교비회계의 재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1 범죄수익 은닉재산 관련 복지부정

### 질의

복지부정 관련하여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민원인은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사채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한다던지, 주식시장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계획(생각) 전혀 없으니, 금융범죄(범죄수익은닉재산)의 전형적인 수법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자를 방송통신 산업 종사자로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십시오. 민원인이나 시청자가 방송통신사 조합원이 아님은 기정사실이고, 사주를 대신하여 비정규직의 연봉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사립대학의 강압적인 대학발전기금 명목 기부금 유치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인은 출신대학(OO대학교 및 대학병원)에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전달할

- 계획(생각) 전혀 없습니다.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고 있고, 졸업생이 출신대학의 학생운동권 내지 교원도 아니고, 학원 재단 이사진들을 대신하여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임용한다던지 조교수를 부교수로,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데 개입할 필요는 없고, 비정규직 교직원의 연봉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인은 사회인이자 교육계 직원 내지 출신대학의 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3.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성당, 교회의 헌금 및 기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원인은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경목실 관련 성당, 교회에 헌금 및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생각) 전혀 없습니다. 대가성이든 사교관계이든 헌금이나 기부금을 전달할 이유는 없고, 경찰행정 및 복지행정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의 인사 승진 관계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신** 2015-04-0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금하는 발전기금은 학내 구성원이나 대학 관련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에 강압적인 대학발전기금 모금이 없도록 주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2 비전임 교원의 이사 취임

**질의**

당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연구교수(비전임교원)로 근무하시는 분이 당해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당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명예교수로 추대 받으신 분이 당해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참고로 대학 내부의 “명예교수 운영 규정상” 연구나 강의참여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대학 내 명예교수 신분으로 연구나 강의참여에 참여하는 명예교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신** 2015-04-28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사회가 학교의 학사행정을 간섭하는 것을 막고, 교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 및 감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으로 ‘연구교수’의 정확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나, 비전임교원이라 할지라도 연구교수가 해당 대학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전일제 근무를 하고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문연구를 전담하고 있다면 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교수도 이사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33 판례명예교수는 해당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서 추대되어 명예직으로 연구활동이나 특별강의를 하는 사람(명예교수규칙 제2조 및 제5조)이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의 겸직금지위무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3 대학특성화사업 구매

#### 질의

OO여자대학교 전략평가팀 000입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라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특성화사업 세부사업 중 교육용기기(실습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1년씩 구매부서에서 컴퓨터를 단가체결(제한입찰 : 자본금, 실적 제한 등)을 통해 단가모델을 선정하고 할인가를 적용하여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교육부 재정지원사업(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약 8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본교와 단가체결 된 업체를 통해 단가체결 된 동일 모델로 할인된 가격에 컴퓨터를 납품받으면 국가당 사자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5천만원 이상규모라서 반드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본교의 내부규정상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2천에서 5천만원 안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예 3500만원)에는 학

교단가체결업체에서 단독으로 물건을 납품받으면 앞의 경우와 같이 국가당사자의 계약에 위반되는지요?

- 3) 그리고 입찰을 진행해야한다면 완전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안입찰(자본금, 실적 등)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제안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 제안입찰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회신** 2014-11-18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 및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으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을 진행하도록 했다면 5천만원 이하라도 입찰을 통하여 투명한 구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34

###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으로 연구비 집행

#### 질의

한국00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 발전기금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입받아 전입받은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전입받은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의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제2항에는 운영계산서의 작성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영계산서 운영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과목에 대응하는 운영비용의 계정과목은 산학협력비(지식재산권비용, 학교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이므로 학교 발전기금재단으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아울러 상기의 의견대로 발전기금재단 전입금을 연구비로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산학협력단회계로 발전기금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 2015-02-0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계정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이나 학교발전기금재단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이에 대응하는 계정인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서(p10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5 산학 협력 EXPO의 허구성

**질의**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2014년도 산학 협력 EXPO의 주요 프로그램인 제2회 창인 발굴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5개 업체로부터 채용 메달을 받고도 취업을 못한 OO대학교 산업디자인과 4학년 000의 아버지 000가 억울해서 별첨에 내용을 교육부장관님 및 관계자분들에게 별첨의 내용을 알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 답변 및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000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2015-02-0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2014 산학협력 EXPO’의 ‘제2회 창인발굴 오디션’은 대학생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창의적인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결과가 반드시 최종 채용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인발굴’ 오디션 참가 업체는 기업별로 채용예정 단계(수준)를 ‘서류심사 통과’, ‘면접심사 통과’, ‘최종 합격’ 등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제출하였고, 입사를 희망한 (주)OO커뮤니케이션즈는 최종 채용 계획 확인 단계에서 ‘1차 서류심사 통과 예정이며, 향후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기로 예정하여 오디션 참가결과에 의해 최종 채용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행사 진행 사항은 운영진이 오디션 사전 오리엔테이션, 사전 리허설, 오디션 종료 후 개별 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은 자체 인사규정 등이 있으므로, 오디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여 교육부에서 해당 기업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해당 행사의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36 도립(공립)대학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

### 질의

1.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에서 지급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처리기관 접수번호(△△△-△△△△-△△△△△△)에서 “산학협력단장은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교규칙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단장의 보직수당은 대학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공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한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대학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립대학도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직책급)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2-10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가능한 경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문의한 보직수당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법령 등에 따른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산학협력단장의 직책수행경비의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7 연구비 부당집행 회수 및 연구비 인건비 책정

### 질의

1. 산학협력단은 2013년도 교육부감사 시 연구수당 부당집행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여 해당 과제 교수님으로부터 부당집행액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수액은 해당 연구과제 지원기관에게 반납해야하는 것인가요? 해당기관에서 반납을 거부한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연구지원부서(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담당)의 인력이 여성가족부 사업에 행정인력으로 참여합니다. (연구정산 담당의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지급하고 있음) 하여 담당 교수님께서 사업비에서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급여 외 소량의 인건비(수당 격)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부인건비 책정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부적정 사례로 인정하는데 여가부의 승인이 있다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2-1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회계감사에 따른 연구수당 회수는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 담당기관으로 반납 처리하여야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계상. 집행할 사항으로 타부서 소속 행정지원 인력의 내부인건비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8 산업단 활동에 불참시 불이익 여부

**질의**

시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산업단 등의 활동을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을 시 장학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졸업 시 논문에 타격을 주거나 다른 수업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회신** 2015-04-27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산업단 활동에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편이 보다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 답변드립니다.

## 39 링크사업 평가기간 동안 대학재원 입체

**질의**

LINC예산이 지원되는 기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 평가 기간(3월~5월) 동안 대학

재원을 입체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일, LINC사업이 평가결과 탈락될 경우, 사용한 대학재원 집행분은 손실처리 해야 하나요?

**회신** 2015-05-21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2014.1.20.)에 따라 평가기간(2014.3.~5.) 동안 대학별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 예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평가 기간 동안의 사업비 집행은 재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관계로 반드시 필요한 지출 중심으로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탈락 시 기집행분은 재원별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0

### 전문대학에 4년제 학과 개설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질의**

대학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4년제로 운영되고 있고, 알아보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자율화(4년이상)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 전문대학에 4년제 학과가 언제쯤 더 개설이 될까요?
2. 간호학과처럼 우선적으로 4년제 학과를 개설하실 계획은 없나요?

**회신** 2015-06-03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48조에 의거 2~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제50조의3에 따라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에 한해 4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국회 법안 통과 시 시행령 개정 등 1~4년제 학과 개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산업의 고도화·융복합화로 고급 기술인력 수요가 높은 학과·전공 중심으로 학사학위과정 개편을 할 예정이며, 고등직업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 후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통해 4년제 학과를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 41 대학 특성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관한 기준

### 질의

12.31까지 학교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으로 바리스타 수업을 하였고 1회 바리스타 수업 때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바리스타 수업 보조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 때도 분명 시간당 2만원씩 주신다고 하더니 12.8에 바리스타 수업이 종료되었고 오늘이 되어서야 규정이 변경되어서 시간당 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제 동료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15-01-2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대학 특성화사업은 개별 대학이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는 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별 대학에서는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42 ○○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육부 특성화사업 지원금

### 질의

○○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디자인학부와 도시대학이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디자인학부와 도시대학이 통합이 되어서, 기존에 예술체육대학 소속 디자인학부가 아닌 새롭게 바뀐 “도시과학, 디자인대학” 소속의 디자인학부가 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통합이 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른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통합이 되었을 때 특성화사업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2.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가?

**회신** 2015-01-20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는 사업선정 이후 협약을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계획의 이행여부를 연차평가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 제출한 학과 통폐합 계획은 대학 특성화 사업 참여 및 사업단 선정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의 신설 및 학부(과/전공) 개편추진을 위한 대학의 실행계획으로, 사업계획 제출 시 개별 대학은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학과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능 하도록 사업이 계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계획에서 학과 통합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계획 의무 이행사항으로 통합으로 인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계획서상' 학과 통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면, 이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중간 평가를 토대로 지원금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을 기존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학과 통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학과 통합이 없다 하여도 기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43

###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1

**질의**

사립대학의 특성화대학선정 국고지원재원의 물품구입 다자간 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적합품목 대기업 배제 조항에 적용받지 아니하는지 질의함.

**회신** 2015-01-2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귀 대학이 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21조제1항 제8호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참가자의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국고 예산집행 2

### 질의

OO대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라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특성화사업 세부사업 중 교육용기기(실습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 추진 시 국당법에 의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교의 내부규정상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 2천에서 5천만원 안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예 3500만원)에는 학교단가체결업체에서 단독으로 물건을 납품받으면 앞의 경우와 같이 국가당사자의 계약에 위반되는지와 완전경쟁과 제안 입찰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 2014-11-18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 및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으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을 진행하도록 했다면 5천만원 이하라도 입찰을 통하여 투명한 구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45 일반학생이 계약학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가능 여부

### 질의

OO대학교 교무처입니다. 우리대학이 2015학년도부터 채용형 계약학과로 3D 창의 융합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D 관련 학과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 많고, 대학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학생들도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일반학생이 계약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4-09-03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련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의 의미 :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촉법)」 제8조 및 산촉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사관련 사항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4조는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일반학과 학생의 계약학과 부전공 이수와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학생의 계약학과 부전공 이수관련 고려사항임. 그러나,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 외 학과이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산업체에서 50%이상 부담하는 등 일반 학과와는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경영악화나 경기변동 등에 의해 계약학과가 중도에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전공을 이수하던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계약학과 의 학사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일반학생들이 손쉬운 부전공 스펙 쌓기 용도로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종합판단) 일반 학생들에게 현장 관련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계약학과 수업 중 일부를 수강하는 것은 ‘산업체와의 계약서’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계약학과 전체 과정을 일반학과 학생들에게 이수하게 하여 부전공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계약학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 학생들이 계약학과 의 커리큘럼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부분을 일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1인점포 ‘계약학과’ 입학자격부여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5인 미만산업체’의 경우에도 ‘계약학과’의 개설 및 입학’을 촉진하나 「산학법」 제8조조 제1항 규정상 산업체 대표자를 제외한 소속직원에게 국한하여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된 단체, 상인회 등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점포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본 산학법’에 제정취지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법률상’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1인사업자’의 경우 계약학과 입학 자체가 불가

**회신** 2014-11-21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련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의 의미 -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촉법)」 제8조 및 산촉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학과의 입학대상 : ‘산촉법’ 제8조는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소속직원이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과 소속직원의 해석상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의 1인 사업자는 대표자로서 ‘산촉법상’의 소속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학과 입학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면서 ‘산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7 산업체 학교 지원시 사업자등록증 대신 배치 확인서 대체 여부

**질의**

산업체 학교를 갈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본사가 OO로 되어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 지사로 해서 등기로 사업자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감리단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OO시에는 사업자가 따로 없고 OO시청에 배치확인서 이름이 들어가서 있는데 배치확인서로 산업체로 학교 입학이 안되나여? 사업자 등록증이 OO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OO시청에 감리단 배치확인서 들어가 있어서 OO시에 근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감리단 특성상 회사를 퇴직하거나 OO시에서 다른 시로 옮기게 될 경우 배치확인서 상에 나오기 때문에 OO시에 있다는 증빙서류는 가능합니다. OO시에 있는 대학에 산업체로 입학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 대신 OO시에서 발급해주는 OO시에 근무 하고 있다는 배치 확인서로는 안되는지여?

**회신** 2015-01-07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련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학협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학협력법」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권역별로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운영요령」 제4조제1항은 “권역”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이거나 동일한 시·도가 아닌 경우에도 대학과 산업체등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문에서는 복수의 지역에서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권역 내로 보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계약학과운영요령 제4조제1항 제2문의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인께서 계약학과 학사운영 기간 이상으로 본사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약학과 과정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법령상 민원인께서 근무하는 형태가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동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과정보다 짧은 경우라면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과 입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48 산학협력 입학 요건에 대하여

### 질의

OO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전공(계약학과)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응시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학교가 응시 전에 협약을 완료해야만 응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자기개발과 향후 전문가를 기른다는 의미로 협약사항에 동의하고 협약하고자 하였으나 협약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본사는 경기도이고 저는 경남 OO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 및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 즉, 경남에 지사나 지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라는 곳이 꼭 지사나 지부를 둔 대형업체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만 느껴집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틈틈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제 입장에서, 부동산의 기초지식을 쌓고 더 깊이 공부하여 나름 개발 쪽의 역량을 넓히고자 하는데 지사나 지부가 없는 업체에서 일한다는 것이 학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 물론 산학협력이 아닌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엔 학교와의 거리도 멀고 평일 수업이며 등록금도 자기부담 100%입니다. 여러모로 비교해서 산학협력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협력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한정적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재택근무자나 파견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장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부가세법상’ 규정도 있고 회계용어상 의미도 있더군요. 좀 더 호혜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생겨난 취지를 먼저 재고해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권리주시면 안될까요?

**회신** 2015-01-07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련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학협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학협력법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권역별로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운영요령」 제4조제1항은 “권역”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이거나 동일한 시·도가 아닌 경우에도 대학과 산업체등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문에서는 복수의 지역에서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권역 내로 보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계약학과운영요령 제4조제1항 제2문의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인께서 계약학과 학사운영 기간 이상으로 본사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약학과 과정을 이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법령상 민원인께서 근무하는 형태가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동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과정보다 짧은 경우라면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과 입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49

## 2015 계약학과 설치현황

## 질의

2015년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회신

2015-03-19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계약학과 현황은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리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계약학과”로 검색하시면 대학별, 유형별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50

## 대학내 도서관 관리감독 소홀

## 질의

집 인근의 OO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1층 열람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전화통화,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심각한 학습권의 침해입니다. 열람실 내에서 일어나는 소음 및 학습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관리감독이 없습니다. 이 학교학생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두기에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심각한 소음과 취식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 회신

2014-12-22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OO대학교 도서관 자유열람실 이용 시 일반회원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민원을 주셨습니다. OO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기에 첨부합니다.“저희 대학교 도서관 자유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회원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시순찰을 통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 및 안내 포스터 부착,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습권 보장과 함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유열람실 이용에 대한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도서관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자유열람실 내 정숙, 휴대폰 통화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등 안내 포스터 부착
2. 자유열람실 이용 준수사항 부착
3. 자유열람실 관리감독 강화
4. 자유열람실 이용시 민원발생시 1층 안내데스크에 접수하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51

폴란드 야기엘로니아대학 <한국학과> 신설 지원

질의

해외에서의 한국학(韓國學) 교육 및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한국정부·유관기관·대기업, 주요 언론·방송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소관 부처·기관, 지원 범위·방법·절차·기간·구비서류 등 지원요건을 알고자 문의합니다. 저는 오랜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폴란드 크라쿠프(Krakow)에 있는 명문 야기엘로니아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초빙교수로 <한국정치경제>, <한국문화>, <한국어>, <북한정치경제>,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 등을 강의했던 000라고 합니다. 상기 대학에 2014년 가을 학기(폴란드 '겨울학기')부터 『한국학과』가 신설되어 제반 여건이 미비한 상태로나마 개강되었습니다. 이미 주(駐)폴란드한국대사관(대사 홍지인)에는 보고했습니다. 이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모든 학생이 정부지원으로 무상(無償)교육을 받고 있고, 교수 등 교직자의 보수가 매우 적으며(월평균 50~60만원), 정부지원 대학운영비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대학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미 『한국학과』에서 2015학년도에 강의할 3명의 교수에 대한 1년간 보수지급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과』 신설단계에서 기타 보조인력 등의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 부대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학과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도서실, 학술세미나, 공개강연, 한국문화축제 등 상당한 소요경비가 예상됩니다. '한류(韓流; Korean Wave)' 덕분에 폴란드에 '한국붐(Korean Fever)'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해외문화홍보원·외교부 등 정부와 국제교류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세종학당 등 유관기관과 삼성·현대·LG·SK·롯데·한진·두산·POSCO 등 대기업과 주요 언론(조·중·동), 방송(KBS·MBC·SBS·EBS) 등이 합심하여 거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국력신장과 높은 문화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회신** 2015-01-30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교육부는 한국학진흥사업단과 함께 해외의 한국학 발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기엘로니아대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는 열세지역의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학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지역에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강의 개설, 연구소 설립, 장학금 지원, 학과 개설 등 현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이내로 총 3년간 지원하며, 공모제(평가 후 선정과제만 지원)로써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5.04.21.(화)~04.27(월) 예정입니다. 상세 정보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http://ksps.aks.ac.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2

###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자산등록제 관련 개선 요청

**질의**

연구자(혹은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학교 도서관에 귀속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가의 연구장비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몇 만원도 되지 않는 도서를 학교의 자산으로 등록시키고 관리하는 일은 행정업무만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정책을 폐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5-05-20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국가R&D 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공동관리 규정 제20조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도 유형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바, 주관연구기관 소유물로 그 관리 및 책임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께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대학 도서관에 귀속하여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입 도서 관리에 관한 귀하의 소속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3

한국연구재단 KCI사업의 민간산업 중복 및 침해

질의

교육부 학술진흥과에서 관할하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사업(학술 논문 원문 무료 공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오니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 드립니다.

가) 한국연구재단은 KCI 사업을 통하여 2014년 12월말 현재 392,712편의 학술논문을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술논문이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나 이용 동의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개됨으로써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KCI 사업은 학술논문 무료 공개 여부를 학술지 평가항목에 배정(100점만점에 7점 부여)함으로써 학술논문 무료 공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등재/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에서는 평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강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 KCI 사업은 민간의 학술논문 온라인 사업과 중복되어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고, 아울러 타 공공기관의 사업과도 중복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 지난 2015년 3월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설훈) 주최로 열린 ‘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래도 좋은가’ 토론회에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수미 서기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할 기관인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의 KCI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 드리며, 민원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5-06-0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1. 저자의 권리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은 후, 2012년 학회로부터 원문공개동의서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KCI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회로부터 ‘원문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을 때, ‘저자가 학회에 제출한 저작권 양도 확인서 또는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거나 저작권에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된 규정’도 함께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KCI에서는 저작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자 본인이 직접 원문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KCI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원문공개 동의 및 CCL설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원문서비스 개시 이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사유로 이의제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s)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라이선스 - 아울러, 민원인이 예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2007고정, 2009.1.16. 판결)은 동 민원인이 연구재단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대전 감사원에 기 제기한 바 있는 동일 민원으로,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관의 연구재단 방문 감사 결과, 민원인이 제기한 건(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건)과 연구재단 처리행위의 건은 별개 건인 것과 연구재단의 원문공개 절차에 저작권 위법소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상 공개에 따른 점수 차는 사실상의 무상 공개 강요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2006년부터 10년째 학술지평가사업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온라인 접근의 편리성”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DB인 WoS (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를 위한 평가항목에도 온라인접근성(오픈액세스 여부)은 주요한 평가항목입니다. 이는 무상공개에 대한 변별이 아니라 온라인 접근성에 대한 배점으로, 학회에서 7점(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원문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입니다. 최근 3년분 이상 원문의 유상공개는 3점이고, 무상공개는 5점으로써 점수 차는 2점에 불과합니다. 현재 KCI에서 원문이 공개되는 논문 수는 총 392,712건으로, 이 중 재단의 예산지원분야가 아닌 이공분야 논문이 과반이상을 차지(52%, 203,932건)한다는 의미는 국내 학회들이 강제로 원문공개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의사가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KCI 사업의 중복여부로 세금 낭비 관련 연구재단은 동일 DB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KCI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연간 18억 7천여만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전략연구소] “KCI사업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 분석” 2015. pp.55~80). KCI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국가적인 데이터로써, 현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서 중복구축 없이 공동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방 정책에 따라 KCI에서 구축한 논문정보, 참고문헌정보, 인용정보를 민간 업체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코리아스칼라 제공(2015.3.9.), 교보문고 제공(2015.3.26.), 학지사 제공(2015.3.24.) 학술논문 무상공개 관련 교육부 입장 관련. 2015년 학술지평가사업 및 학술지 지원사업 평가항목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 결과(2015.2~4. 학술지발전위원회 검토), “온라인 접근성”은 학술지의 변별성을 가리는 중요 평가항목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향후에도 학술논문 무상공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4

##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의 제38번에 저(著) 대학교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평가받을 수 있게 조치 요망

### 질의

명예교수인 제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실적을 심사평가 받고 유능하다고 평가되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의 2015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정의제 ‘한국형 인재양성 모형 및 전략의 세계적 확산과 공유’(국영문 출간) (연번 38 학문분야 사회과학 유형 총서학) 에 온라인 시청을 순조롭게 끝마쳤습니다. 물론 같은 날 동시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실무자께서 친절하게 기관신청도 온라인으로 순조롭게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27일 친절하신 000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보완서류 하나를 스캔으로 온라인으로 보내고 내용을 연구책임자 실명과 공동연구자의 실명을 쓰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쓴 것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완 서류 하나는 부설 경영연구소 소장의 발령장(총장 직인이 찍힌 발령장)을 스캔해서 온 라인으로 보내라는 것이므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산학협력단의 다른 실무자가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와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명예교수이므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전날 5월 26일 온라인으로 순조롭게 이미 끝마친 토대연구 의제 신청서와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청 완료한 기관 신청서 모두가 무효라고 말하고 부설 경영연구소장의 발령장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해서 OO대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저는 거절당했고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순조롭게 5월 26일 저의 토대 의제신청서와 또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관 신청서가 끝나쳐졌고 다만 보완 서류로 제가 지난 33 년간 소속해 있어온 부설 경영연구소 소장의 발령장만 들어서 스캔으로 보내면 되는 일인데 원천 무효를 당하고 보니까 참으로 억울합니다.

**회신** 2015-06-15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2015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의제 38번에 저 대학교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평가 받을 수 있게 조치 요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경영학박사로서 OO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로 지난 33년간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국내 학회와 세계의 선진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시었고, “깨달음의 경영학”을 창시하여 ‘세계의 경영 및 기술학술총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 50개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기립 박수로 호응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세 노인 명예교수’라는 이유로 ‘2015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접수’에서 원천 무효 처리된 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토대연구지원사업은 사전편찬, 기초연구DB 구축, 희귀언어 연구자료 축적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식생산의 원천제공 및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로 집단연구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도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며,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필히 참여토록 신청요강에 명시하였으며, 연구진 구성조건에서도 “연구책임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또는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구재단에 확인한 결과, 신청요강에 명시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1) 부설연구소장 발령증명서를 누락하셨고, 2) 연구소장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으셨으며, 3) 전임교원신분이 아닌 명예교수 신분이셨습니다.
3.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에서는 귀하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실무자에게 각각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누락된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1) 과 2) 요건은 해결 가능성을 찾았으나, 3)의 요건인 연구책임자의 전임교원 자격은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에서는 접수할 수 없는 사유를 귀하와 산학협력단에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주관 기관 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4.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소속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및 전임연구인력 등과 함께 연구를 이끌어 가야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며,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하므로 대학소속의 전임교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다른 인문사회분야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 요건도 유사함. (ㄱ) 대학중점구소 지원사업 : 반드시 연구소소장이 연구책임자, (ㄴ)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정함. (ㄷ)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

- 소 소속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㉔) 인문한국지원사업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
5.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의사전달을 하면서 귀하를 이해시키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신청하시고자 하시었던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연구신청 자격으로 전임교원을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하시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오랜 연구 경험과 탁월한 연구 성과를 공동연구원 참여를 통해 펼쳐 보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 5 장

교육정보



## 1

## 미세먼지 농도 관련하여 일정 수치에는 휴교령 내리는 것을 법규화

## 질의

작년에 미세먼지 농도 관련하여 작년 5월부터 점차 시행하여 올해부터는 일정 수치에서는 휴교령을 내리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 인천지역은 Pm10에 500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하여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궁금하여 환경부에 전화해서 물으니,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네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 학교는 휴교이고, 어디는 아니고 하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나라에서 좀 더 확실한 선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PM10에 수치 80이 넘으면 휴교령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환경오염관련 건강문제는 더욱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에 따른 관련 법규들도 생겨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신

2015-03-09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 및 환경부의 예보제, 시·도지사의 경보제의 운영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도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지역 단위학교의 휴교 및 휴업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의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47조의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홍보자료 배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조치강화, 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장의 조치현황 파악,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학교 재난안전훈련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

질의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써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요즘 많은 안전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2.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 담당자들이 배치가 됐나요?

회신

2014-11-04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1. 연3회 ‘국민안전처’ 주관 하에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지진, 풍수해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토론훈련 및 현장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수시로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진발생 상황은 기상청에서 실시간 국민안전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학교 등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NDMS(상황전파시스템)을 2015년초부터 단설유치원급 이상 각급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각급학교에 안전담당 교직원을 배치하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특수학교는 원아 및 학생들이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훈련 등 법령상 대응훈련을 화재, 지진, 태풍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중심 훈련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진대피훈련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은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재난유형별 매뉴얼 일반인 열람 가능한지?

## 질의

중앙부처별로 작성되어있는 재난유형별 매뉴얼의 일반인 공유 및 열람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 회신

2015-05-15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 재난관리매뉴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5에 의거하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부처내부의 적절한 위기대응 대처를 위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 및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동매뉴얼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4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보 방안 제도

## 질의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확보에 대한 제도나 운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5-06-04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일명 ‘세림이법’) 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보호자 탑승 의무,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3년→2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2013.5.3)을 추진하면서 전수조사 실시(3회),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 및 합동단속

실시, 동영상, 리플릿·만화제작 배포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

### 학교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 처리절차

#### 질의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처리기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회신

2015-06-26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서 근거하여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는 교육활동 중 사고발생 시 학교 또는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청구절차 : 청구서 작성(신청인 또는 피해자[보호자]) → 접수, 확인 심사 및 자체 심사(시·도학교안전공제회) → 지급 여부(금액) 결정 및 통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시·도교육감이 해당 시·도 공제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의 급여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추가사항은 (공제회 콜센터 ☎1688-49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 “안전제안” 초·중등 안전체험시간 생활기록부에 기재

#### 질의

국민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재난대응의 선진국인 일본처럼 어린 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안전체험시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회신** 2015-02-04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되풀이되는 재난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작년 11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단순한 강의식, 시청각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체험 시설 건립, 체험버스 도입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난한국훈련, 민방위훈련, 화재훈련 등을 체험위주로 적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올 3월부터 학교에 점차 적용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체험학습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염려해주는 부분이 실제적인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 한국을 만들어가는 데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7

###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질의**

대학생 신분이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비상벨에 대한 단일한 인식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오작동이든 장난이든 대피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지요?

**회신** 2015-02-03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유·초·중·고)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등 법령상 대응훈련\*을 화재·지진·태풍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중심 훈련으로 전환하고, 대학도 민방위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점검반을 편성하여 훈련 상황 등 점검(2015. 3월~)하고 있습니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연 1회 3일), 민방위 대피훈련(연 3회, 「민방위기본법」 제25조), 화재 대피훈련(연 2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규정」제14조) 등 특히 기숙사, 합숙소 등 공동 거주공간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별도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역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제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으로 어려서부터 체화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육부,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표준안 제작

질의

이전에 교육부에서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표준안을 제작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2-03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 7대 유형별 교육 표준안은 현재 정책연구가 마무리되어 2015년 2월 10일부터 시·도교육청 강사요원들에 대한 연수가 실시됩니다. 연수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담당자들을 모시고 전달연수로 이어지며, 2015년 3월부터 학교에 적용되며, 7대 교육표준안에 대한 구성 체계안은 각 학교로 발송된 상태이지만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은 2월부터 홈페이지(<http://schoolsafe.kr>)를 통해 해당선생님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9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요청

질의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교육 의식 함양으로 보행자 중심 안전질서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회신

2015-03-27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교통안전 포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및 단원을 신설(2015.9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 교육과정 적용(2017년) 이전에 학교에서 안전교육(교통안전 포함)이 체계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2015.2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의 체득과 습관화를 이끌어내어 사회전반의 변화에 첫 걸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0 민간인(기관)이 학교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방법

### 질의

본 협회는 사단법인 승인 신청 중입니다. 유·초·중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응급 조치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자를 파견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교육부에서 안전교육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2015-04-13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안전교육 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와 개별 협약 및 계약체결로 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해당기관(사단법인)과 계약 체결하여 단위학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부에 지정 승인하는 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진행하신 바와 같이 사단법인을 승인신청 중이라고 하오니, 그 승인 후에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1 사이버대학의 전과제도

### 질의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학년 및 3학년은 동일학년으로 전과가 가능한데 사이버대학의 경우 제5항에 따라 학년에 상관없이 정원범위 내에서 동일학년으로 전과 가능한 것인지,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동일하게 3항에 근거하여 2,3학년만 전과 가능한 것인지요.
2. 학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수 학기 상 4학년이나 이수 학점이 적어 수료학년은 2학년인 상태입니다.
3. 4학년이라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과를 희망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학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학에서 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4학년도 전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07-14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전과)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장은

1. 학과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2.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의 범위를 학생이 이수한 내에서
3. 학칙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께서 2학년 수료 상태이시라면 취득하신 학점 규모와 다니고 계신 대학의 전과 기준을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사이버대학 졸업 후 입학

**질의**

사이버대학 교육학과를 금년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해당학과에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어 다시 입학을 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에 재입학의 개념(제적 후 입학)이 아니라 다시 편입학을 하여 아동관련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는 졸업 후 동일학과로의 편입학은 안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교육부에서 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졸업한 학과와 동일한 학과로 (동일학교 동일학과) 새로 입학하는 것이 안되는 건가요?

**회신** 2014-12-11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 후 동일학과 편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사이버 대학에 재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질의

사이버대학 재입학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OO사이버대학교에 산업체위탁전형(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일본어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해경을 그만두었고 사이버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학교에서 등기로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경을 그만두었으니 재취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기에 취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취직할 생각도 없었으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기에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를 취득할 예정이었는데 알아보니 일본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학위로 인정하지 않기에 대학 편입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OO사이버대학교에 재입학을 하려고 하니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처음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재입학을 하려면 산업체에 취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와 같은 법은 교육부에서 정하셨다고 합니다.

### 회신 2014-12-11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산업체 위탁전형은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계속교육기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교육부는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만이 해당 전형에 의해 대학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되신 이후에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자 하셨을 때 산업체 위탁전형으로는 재입학이 불가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ㄱ) 모집 기간에 맞춰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신지의 여부, (ㄴ) 또한 재입학 신청 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자율사항입니다.

## 14 저소득층 자녀 EBS교재 무상 지원

### 질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EBS 교재가 무상 지원된다고 하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2014-12-22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의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교생이 아닌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EBS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EBS 출판사업부 무상지원 담당자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본부에 문의하신 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기 양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 원격대학원 설립 가능 여부

### 질의

원격대학원(사이버 대학원) 설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고등교육법」을 비롯 대학 설립 규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버 대학원 대학교 즉 학부 과정 없는 대학원 과정만으로 대학 설립가능 여부 및 일반대학원과 특수 대학원 모두 설립이 가능한가요?(정확한 관련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14-12-26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장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만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대학 현황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 정보공개3.0 또는 인터넷포탈에서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www.cuinfo.net)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6 사이버대학 편입학과 가능하도록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질의

사이버대는 학업을 본인이 사정에 의해 기존 사이버대의 학과 학열로 진학(시간적, 경제적, 학습) 비용 소모해가며 학과 진행학기 이수후 개인의 사정에 의해 학기를 보류시키고 중도 중차(포기나 보류)를 시켜 놓고 세월이 흐른 후 다시 향학을 세우고자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재 사이버대 수료의향이 있어 OO대학교 사이버대나 기타 타 사이버대에 편입학(기존 방통 이수 학점과 사이버대 2학기 이수 학점이 있어)을 하려 하여 OO대학교 사이버대 편입학을 문의 들은 답변은 본인이 기존 사이버대 이수 학점 외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려 하는데 고사시대 답변은 2학년이든 4학년을 다녀야 한다고 내리정하여 편입학 시에도 그래한다 하여 이것이 현 흐름체계상 어떠한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회신 2015-01-05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사이버대학교도 일반대학교와 같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사이버대학의 장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학위를 수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이버대학을 진학하여 졸업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사이버대학에 문의하시어 입학(편입학) 및 졸업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으셔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제23조의 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2조 :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17

EBS 출판부 사회탐구 영역 인원

질의

OO고등학교 윤리교사 OOO입니다.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도교육청, EBS 등에서 교육과정과 문항관련 외부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BS 사회탐구 영역 윤리교과를 보니 윤리를 전공한 교과 담당자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길래 이리 민원을 올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윤리 교과는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교육과정평가원만 보더라도 윤리를 전공한 담당자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BS도 이런 구성에 맞게 윤리를 전공한 담당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탐구 영역 예를 들면 역사, 지리, 일반사회 등에는 전공영역 담당자를 배정해 놓았는데 윤리만 없습니다. 현행 수능 체제를 보면 윤리 2과목, 역사 2과목, 지리 2과목, 일반사회 3과목이 시험을 치룹니다. 이를 토대로 한 상식적인 기본 인원구성은 1,1,1,1 혹은 2,2,2,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EBS는 특정교과에는 인원이 많고 유독 윤리 전공자만 담당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윤리교과는 윤리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교과 전공자가 문제집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EBS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윤리교과를 전공한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회신

2015-02-23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EBS측의 확인을 통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능에 연계되는 사회탐구 교재는 내부적으로 사회계열 전공 교과위원이 교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십 수년간 교재를 집필해 오신 집필진 및 연구원, 전국 윤리교과 담당 선생님들의 검토를 거쳐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교재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 구성에 변화가 생겨 일시적으로 윤리 전공 교과위원이 부재하였으나, 윤리 과목 책 수가 증가하고 그 비중 또한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 우선적으로 반영, 교재 개발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 하오니, 민원인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 사이버대학교의 관리강화

### 질의

나이가 들어 다시 학업을 시작한 학생이자 주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면 수업을 컴퓨터 화면으로 듣고 수업한다는 거 이외에 일반 학교와 다른 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진학을 했는데 매년 새롭게 촬영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변경된 사회변화 등의 설명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관련 소식 및 그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촬영한 수업 내용을 몇 년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지만, 한번 촬영한 자료를 반복 사용하는 수업이라니.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 회신 2015-04-15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질 담보를 위해 강의 콘텐츠의 3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콘텐츠의 재사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6 장

평생교육



## 1

## 과외에 관한 형평성 없는 법률

## 질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에서 (휴학생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회신

2015-02-0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학업을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대학생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휴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 부과는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액 불법과외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

## 마이스터고 출신 대학진학

## 질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여 현재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

스터고 출신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 및 전형, 특성화고졸업자전형에 다시 마이스터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4-0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1. “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마이스터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 특별전형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제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체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동 전형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므로, 귀하께서 동 전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학업 제도는 사내대학, 계약학과 등이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도 고등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http://www.hifive.go.kr))를 통해서도 후진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과의 교습 가능?

**질의**

개인과의교습 관련하여, 개인과의교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과정이 개인과의 교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1. 대상 : 고등학생, 성인
2. 교습과목 : 위험물, 가스, 에너지, 산업안전, 환경, 산업위생으로 이론수업
3. 교습장소 : 주택

**회신** 2015-04-1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제2조(정의)제3호가 목에 따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정의)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가스, 에너지, 산업안전, 환경, 산업위생의 과목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고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원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습은 「학원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으로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신고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규정에 대하여

**질의**

대학생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교육부가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4-2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교육부는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평생교육법」제15조(평생학습도시) 및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질의**

형사사건으로 전과전력이 있는 사람이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2015-05-1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제3호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한 동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학원 설립 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교육법」 개정(2007년 12월) 이후 학위취득을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질의**

미국에서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구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1급 자격에 해당하지만, 개정법상으로는 자격취득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법 기준 대학원 입학년도가 2007년 이전인 경우에 1급 자격에 해당하고 2008년 이후 입학한 경우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들을 다시 수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안내를 하는데, 구법 적용 기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이 있다면 1급 자격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조정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회신** 2015-05-2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법」 개정(2007년 12월)으로 등급(법 제24조제4항)을 종전과 같이 1,2,3급으로 세분화하면서, 1급 자격은 양성과정에서 제외하고 승급과정을 통해서만 취득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졸업자로서 관련 과목 이수자에 대한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해 2007년도까지 대학원 입학자로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1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2008년도(포함) 이후 입학자로서 대학원에서 일정 과목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령상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 통학버스 관련 ‘법’ 적용의 형평성

## 질의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비해 과중한 것은 아닌지?

## 회신

2015-05-2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는 동법 제17조(행정처분)제1항제11호(시행 2015.8.4.)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부에서는 상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정하고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신설)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5.5.1.)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상기 법령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드리며,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에 대한 법령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입법이 진행 또는 완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 「평생교육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 질의

2015년 3월 3일 「평생교육법」 일부(김세연 의원발의)가 개정되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3.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장이 일반 중등교육과 소속의 초·중·고 학교 이상으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법인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을 안내 하든지,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이상의 학교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

**회신** 2015-06-2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규정 마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 동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만 가능하고, 시행령에서 설치자 변경 항목이 신설 될 경우 개인승계가 가능해지므로 현행법 및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바, 설치자 변경 규정 마련은 불가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개인 간 승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한선교의원, 2015.1.16.)이 발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 2015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방법에 대한 안내 및 혁신학교·대안학교 이상의 학교운영을 위한 컨설팅 요구. 교육부는 2011년~2013년까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규학교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참여도가 저조하여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추가소요 등이 있을 경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규학교 지원 프로그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전환을 위한 연구 실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장단 및 교직원 연수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 9

## 글로벌 교육 관련 포럼 정보

## 질의

현재 국내에 글로벌 교육관련 포럼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 포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2014-10-08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국내 글로벌 교육 관련 포럼으로는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우리부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개최해 온 글로벌 인재포럼이 있습니다. 다만, 포럼이나 세미나 등은 정책기관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공감대 형성이나 지식 공유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이들 포럼이나 세미나 행사계획이 따로 조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아 종합적인 자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인재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여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동 포럼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포럼 홈페이지([www.ghrforum.org](http://www.ghrforum.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대한민국 인재상 회수 가능 여부

## 질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보이는데 해당 상을 회수 할 수 있는지?

## 회신

2015-01-07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대한민국 인재상 반환 및 상장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기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여 인재상 취소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재상은 교육부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시 공고된 계획 (2014년은 8월 19일자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선발 제외 및 취소에 대하여, 1) 추천서류에 중대한 허위, 위변조, 과장 등이 있는 경우 2)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3) 사법처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상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2)의 경우 선발과정상에서의 취소 사유라 할 수 있으며, 3), 4)의 경우 선발과정이나 사후에의 취소 사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상 이후의 행적을 이유로 수상의 취소를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자의 지나친 행위 제한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다,의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상훈법」 제8조의 취소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위 포상업무지침은 동 조항을 정부표창, 정부시상, 모범공무원상 등에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직업체험 제도 도입

### 질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체험처 제공 기업에 혜택 부여 등 국가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회신 2014-07-07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별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지역 내에서 충분한 진로체험처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2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수업시간 배정 관련

### 질의

많은 진로 진학교사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침이라고 내려 보낸 공문에 의구심이 들어 아래와 같이 진로진학교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수업10시간이내 8시간 상담으로 되어있습니다. 10시간이상 수업은 안 되는지요? 상담을 8시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2. 만약 상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일과시간 즉 교과수업시간에 일부학생(1~2명을 데리고)상담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수업권 방해가 될 수 있음.
3. 교장선생님 결재만으로 상담시간이 인정되는지요? (학생상담일지 등 학생 확인 없이 가능한지?)
4. 상담교사의 상담은 수업으로 인정되고 담임교사 상담, 교과교사 상담 등은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많은 진로상담교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업시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과 교사들은 지침 자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학교 내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진로상담교사의 불이익을 없애고 싶으면 수석교사처럼 진로교사들 간 성과급 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부언을 합니다.

### 회신 2014-09-03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학교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질의하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업시간 배정 관련하여서는 2011년부터 매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단위에서 운용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기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로교사 수업시수 등 직무에 관한 대부분의 근거는 이 지침에 의거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의 상담을 수업 시수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의 양성 및 교직이수 과목, 임용시험 내용 등을 개선 등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부과되는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역할을 전문성을 가진 진로교사가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진로교사의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구현하여 학생이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책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교사와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 부모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 질의

부모가 실직 상태일 경우 부모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회신 2014-09-05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부모직장 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부모의 직장을 경험하면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육시설 거주 학생, 부모가 실직 상태인 학생 등 부모직장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결과 발표 시 학생 간 사회경제적 비교, 개인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14 경기도 진로교사들의 지위가 확고해야 진로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질의

남양주에 위치한 OO중학교 진로교사 000이라고 합니다. 도덕교사로 근무하다가 학생의 진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로교사를 선발한다는 공문을 접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서 진로교사가 되었습니다. 진로

교사로 발령을 받아 녹록치 않은 진로교육의 현장에서 수업, 진로상담, 진로특강, 진로체험, 진로캠프, 동아리진로체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학부모 진로코치 등등 산적한 진로 관련 업무들을 해나가면서도 체험학습 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꿈과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진로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원 외 배치]를 [정원 내]로, [+0.5] TO를 [0.0] TO로 줄인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만 하는 교사라면 당연히 정원 내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진로교사는 진로진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시간에 떠들거나 잠자면서 그저 앉아 있기만 했던 학생들이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공부를 해야할 이유를 찾았을 때 긍정적으로 눈빛이 변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진로교사가 되길 잘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회신 2014-11-26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일선에 계신 진로부장님의 열정에 힘입어 학생의 개인 맞춤형 진로세계 지원 사업 및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이지만, 부장님의 말씀처럼 줄어드는 교사 정원의 업무가 진로부장님들께 전가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자유학기제 운영확대 등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 진로부장님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업무가 매우 집중되고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진로부에 반드시 팀원을 보강하여 진로부장님들께서 학교 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리더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2011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처음 배치된 이래, 지난 4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이 모두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진로부장님의 선구자적인 노고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내 진로교육이 체계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진로부장님께서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중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15 진로체험과 수련활동 분리 시행

### 질의

일부 학교에서 진로체험과 수련활동을 동일하게 간주·진행하여 교육적 효과가 떨어집니다.

### 회신 2014-11-26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진로체험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소풍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계기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인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 연수 및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보급을 보급하여 형식적인 진로체험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 진로진학상담교사(부전공)를 희망자에 한해 전공교과로 복귀 요청

### 질의

기계금속교과로 근무하다 2010년~2011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변경 연수를 받고 2011년 9월에 OO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1기)입니다. 제가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교과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기준을 보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상담 및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역할에 매력을 느끼고 교과 변경을 하였으나 막상 연수 후 실제 학교현장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른 환경, 직무역할 및 업무에 제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러한 어려운 환경 및 역할을 극복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1 vs 다수의 교원 상대로 절실한 한계를 느낍니다.(물론 타 학교 상황은 다른 경우도 있겠지요) 따라서 저의 전공인 기계금속교과로 복귀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에 따른 근거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 중등 진로진학교사 충원 및

배치 기본 계획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부전공)심로 교과변경 후 원래의 전공교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조항도 없으며, 진로진학교사 지원자격, 선발기준 및 방법, 진로진학교사 1차 임용발령 배치(34명) 등 어떤 항목에도 부전공 교과에서 전공교과로 복귀에 대한 제한조건 없습니다. 제가 진로진학교사로 발령 배치 후 2012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및 배치 계획에는 지원 자격 조건에 나이제한(55세 미만) 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자로 자격조건만 주어졌지 전공교과 복귀 불가라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전공교과 복귀 불가 조건인줄 알았다더라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연수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유사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항상 연수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거론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복귀불가입니다. 이에 따른 연수 예산 문제라는 저의 연수비를 환수 조치하셔도 됩니다.

#### 회신 2014-12-01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우리나라에 진로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지 올해로 만 4년째이며,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약 93%에 진로부장님이 ‘진로와 직업’ 과목 교사 및 학교 진로교육 총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강조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지난 4~5년간 진로부장님들의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화연수 및 다양한 콘텐츠, 커리어넷 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로부장님께 업무가 과중되어 과목 재 전환을 고민하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진로부장님들이 원활한 업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관리 지침’도 개선하여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장님께서 요청하신 ‘이전 과목 교사로의 복귀’ 등 교원 인사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므로, 우리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장님을 포함하여 전국에 계신 모든 진로부장님께서 진로교육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17

진로진학상담교사 병가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

질의

교육부에서 2014. 12. 31.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개정 요약을 보면, “진로교사 휴직(산후, 병가 등) 시 기간제 교사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채용할 것을 권장함. (㉠) 진로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 진로진학지도 경력, 진로상담 경력, (㉢) 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관련 전공 이수 등 (㉣) 그 외의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목의 인대 3개가 파열되어 병가를 내려고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가 없습니다. 더불어 인력풀을 보며 연락을 하고, 아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통해 기간제를 구하려고 해도 지침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다쳤으나 현재까지 기간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위의 지침을 바탕으로 공고를 냈으나 현재처럼 구하지 못할 경우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지요?
2. 진로진학지도경력의 입증 서류를 담임경력증명서로 가능한지요?
3. 기간제를 구하는 동안 단기간 보강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본교 교사가 보강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2015-04-15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교육부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제2014-1호)을 통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교사 채용 기준을 한정하였습니다. 진로교사 휴직(산후, 병가 등) 시 기간제 교사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채용할 것을 권장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 진로진학지도 및 진로상담 경력 (㉢) 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 관련 전공 이수 등. (㉣) 그 외의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 이에, 두 번째 항목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18 정규 교과시간에 보조강사가 수업 진행하는 경우

### 질의

자치구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진로직업 분야의 전문보조강사(정교사 자격증 없음)가 진로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강사가 10회에 걸쳐 진로수업시간에 진로교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정규 수업시간에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
2.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지만, 담당과목 교사를 대신하여 10회 걸쳐 보조강사가 진로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로교사의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2015-05-11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중·고등학교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 과목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있는 표시과목 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목 교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특정 직업인의 특강 등은 교사의 입회 하에 반별 1회 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는 분야를 보조강사가 대신 강의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권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 내에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기획하고 있는 일이 교사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7 장

국제협력



## 1

## 인정유학의 범위

## 질의

1.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06.12 출국자부터 적용)는 유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부모중 1사람(공무원이나 상사주재원이 아님)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2~3년간 유학을 하게되어 함께 동반한 자녀들이 정규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2014-09-3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인정유학의 범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의하여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도 인정유학으로 인정하나 그 사유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해외취업,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2

## 해외대학 한국분교설치

## 질의

해외대학의 한국분교를 설치운영코저 합니다. 설치운영에 대한 법령과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4-09-24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한국에서 외국학교의 분교를 설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isi.go.kr>)→알림마당→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외국인인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이 가능한가요?

**질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 내 초·중·고등학교에 유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조기유학을 받지 않는 건가요? 부모의 취업비자에 따른 학교 진학이 아니라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유학 또는 연수를 오고 싶는데 비자를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질문을 요약하면 외국인 미성년자가 유학이나 연수를 한국으로 오고 싶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10-1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하 정규교육기관\*에 유학을 올 경우에는 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허가를 신청(본인 및 대리인)하고 ② 해당학교에서 학교장이 발행하는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입학허가서 발급 이후 사증발급 신청·발급 및 입국 절차는 소관 부처(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4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거주의 정확한 기간 해석****질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의해 학생과 부모의 외국 거주 기간은 2012.07.09~2012.12.12, 2013.01.08~2013.07.06 으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1년은 365일을 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만 1년이 아니더라도 11개월째 혹은 12개월째도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4-10-2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歷月)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교육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상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의 계산도 역월(歷月)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하여****질의**

미얀마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던 통역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를 희망하여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편지를 씁니다. 많은 열정과 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 한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유학을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4-11-1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정부 및 개별 대학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동 사업 등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 내에 ‘GKS’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선 문의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국제교육원(정부초청장학생 담당자, ☎02-3668-1389)에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는 대학별로 다양하므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사이트 내에 ‘University&College’ 게시판에서 입학하기를 원하시는 대학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6

### 한·중관계 악영향을 미치는 유학생 모집 및 관리 비리 고발

#### 질의

하루하루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한국을 찾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정확한 유학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학준비관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브로커와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고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을 찾은 중국유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그 진실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회신

2014-12-24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최근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정부·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 관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발절차 등을 적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유학생 모집 및 관리가 부실하여 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자수가 많은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

## 질의

교육부에서 study korea 유학생 200,000명 유치라는 것을 듣고 대구시 OO전문대학교 베트남 학생 약 50명을 유치 시켜 관리 잘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측은 학생이 많아서 더 이상 학생 유치를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교수님들을 데리고 하노이 대학과 유학원 소개를 해준 뒤 저를 빼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작 했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디어와 관리 방법 기업체와의 연계로 베트남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과 취업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이 도망간다고만 생각 하니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관리에 대한 것은 신경 안쓰고 도망간다고만 생각하는 대학들뿐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소개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 해외 취업 기회를 줄 수 있으니 대학 한 곳 소개 시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가 이익이 되게 하겠습니다.

## 회신

2014-12-3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은 개별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학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8

##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 학위 인정 여부

## 질의

한국뉴욕주립대는 국내대학인가요? 해외대학인가요?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는 'extended campus' 라는 표현을 쓰더라구요. 학위를 본교인 미국에서 받게 되며 동일한 학위로 인정받게 되구요.

**회신** 2015-05-27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등 법이 정한 특수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 심사 및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해외 현지의 외국학교법인이 국내 특정 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해외대학의 국내분교임을 말씀드립니다.

## 9

### ‘채드워싱턴국제학교’가 각종학교 범주 포함 여부

**질의**

인천 송도에 위치한 ‘채드워싱턴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5항 각종 학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요? 본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신** 2015-06-01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채드워싱턴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위의 특별법에 의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해외학교의 국내분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학교 설립 형태와 학력인정은 별개의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제 8 장

인사 및 행정지원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의거한 직급보조비의 미지급****질의**

OOOO대학교 OO학과 학과장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예산 범위에서 별표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O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국립대학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학과장/학장에게 직급보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OOOO대학교 재무과와 교육부의 급여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직급보조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국립대학교에 사업비 형식으로 배정하고 있고 각 대학교에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국립학교 설치령」의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법률에서 그 금액을 규정해 놓은” 직급보조비를 대신하여 대학 총장이 임의로 정한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과장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월 4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립대학교에서는 월 20만원 정도를 “교수보직경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직교수들에게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대학교수의 직급보조비를 대학총장이 자의적으로 “교수보직경비”로 대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립대학교수의 수당을 대학 총장이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회신**

2015-06-15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수보직수행경비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급여이며, 동 제도가 추진하게 된 배경(취지)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국립대학 구조조정 관련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

하면서, 국립대학의 무분별한 보직확대 방지를 위해 보직에 따른 총비용(강의시간 감면, 보직수당)의 한도 내에서 보직수행에 대한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각 대학별 처·실·국, 단과대학, 대학원 및 행정조직(과, 담당관)의 총수만 「국립학교 설치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명칭 및 업무분장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총보직한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 3월 보직교수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직수행경비 제도를 시행할 당시 보직수행경비 예산 총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을 모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이 보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직 수가 늘어날수록 보직교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직수행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에 따라 해당 직급 공무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액 : (단과대학장) 월 500천원, (학과장) 월 400천원 이를 정리하면 직급보조비 및 교수보직수행경비는 각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가 행하는 급부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직급보조비는 지급 대상·금액 등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반면, 교수보직수행경비는 위와 같은 경과를 통해 대학에서 지급기준을 적의 편성하여 지급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및 교수보직수행경비 또한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급부행위이므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제대상에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교수보직수행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는 학과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직수행경비를 수급하고 있어 타 수당을 중복수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도 보직수행경비를 수급하여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학과장으로서 수혜가 가능한 직급보조비 400천원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동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복수급을 지양하고,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보직교수의 적절한 편성·운영을 권장하기 위해 보직수행경비의 지급 기준을 대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급보조비와 교수보직수행경비는 정부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근거 법령, 사업 목적·취지가 상이하므로 지급기준도 국가가 정하거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직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의 중복수혜 방지를 통한 차액을 통해 직급보조비 대상이 아닌 타 보직교수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귀하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귀 대학의 경우에도 보직수행경비가 21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나, 학과장을 겸임하는 보직교수에 대한 보직수행경비를 직급보조비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해당 교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이에, 직급보조비와 보직수행경비가 각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자연스럽게 양립하며, 교수사회에서 만족도를 높이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지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

## 동문회 행사시 경조사비 등 학교장 명의 예산집행 여부

## 질의

학교입니다. 학교이다보니 동문회가 활성화 되어있는데 동문회에서 신입생 장학금 지급 등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회 행사 시 축하화환 및 동문회장의 경조사비를 학교장 명의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동 행사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 회신

2015-06-22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동창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주체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등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동창회에서 기탁한 발전기금은 대가성 없이 학교에 기부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발전기금의 대가로 동문회장의 경조사비를 학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문회 행사 시 관련자들의 출장을 학교회계로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3 2014년도 구매목표 비율

#### 질의

1. 교육부 각 실과 별로 2014년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구매증대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합니다.
2.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2014년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구매증대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국립대학교별로 답변 요청 합니다.
3.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별로 공문을 발송하여 2014년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구매증대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국립대학교 병원 별로 답변 요청 합니다.

#### 회신 2014-07-22 [운영지원과]

‘2014년도 구매목표 비율’ 제하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민원인께서 답변을 요청하신 교육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 및 국립대학교 등에서도 우선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민원에 앞서 000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육부에 제기하신 다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의 취지와 같음을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 “공공구매 관련 질의(2013.7.5.)”, “입찰 관련 진정(2013.7.10.)” 및 “공공구매 협조(2013.8.10.)”, “법률시행여부에 대한 답변(2013.12.19.)”, “지명입찰, 제한입찰관련진정(2013.12.6.)”,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활성화(2014.4.16.)” 등향후 유사한 취지의 민원요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회신 없이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3.12.19.일자 ‘법률시행여부에대한답변’ 민원 회신 및 2014.4.16.

## 4 불합리한 공무원 여비 기준의 조정

### 질의

지방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업무로 인한 출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리한 공무원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이에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8월 부산으로 장기 출장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 장기 출장을 위해서는 제 아이들을 직장 및 주소지가 있는 군산이 아닌 서울 부모님 댁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여정이 발생합니다. 구체화하면 (군산→서울), 서울→부산, 부산→서울, (서울→군산)의 여정이 포함됩니다. 이중 팔호 부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군산→부산 간의 비용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담당직원은 말합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왜 만든 기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직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독려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상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부산에서 예정된 학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출장 시 숙박비 기준에 따르면 조교수 직급인 경우, 1일 숙박비가 5만원입니다.(광역시 기준 적용). 그 시기에 학회가 열리는 근역에서 이 비용으로 숙박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교수들의 경우 그나마 방을 같이 사용한다는 전제하 숙박호텔을 찾지만, 여자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이 민원을 처리하시는 담당자께서 직접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공무원 숙소를 건립하여 공무원 여비기준에 맞춰 숙소를 직접 제공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1)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당집행으로 인한 기존의 사례들도 있지만, 기준이나 지침은 부정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직급에 따른 구분,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직급에 따른 상징적 역할을 인정합니다만, 실무진행을 위한 배려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미국 기업의 경우, 비행시간이 4시간30분이상이면 비즈니스클래스를 탈 수 있도록 합니다. 파트너인 그들과 미국에 갈 때, 저는 다른 좌석에 앉아서 가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편적인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직급이 아니라, 업무출장 시 직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우선 시 하는 배려입니다. 당연히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인간적인 기준이지요. 공무 출장 중 일등급 호텔에 머물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숙박비의 경우 초과할 수 없는 적정 상한선을 정하고, 실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1박 10만원 이내, 실비 정산 정도로만 해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부정책과 기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들을 조정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나와서 적폐와 불합리한 규제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과 지침은 산재해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제가 겪는 여성들이 일하는 데 비협조적인 환경, 연구 진행을 저해하는 운영 기준 등이 만연한 이율배반적 환경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지요? 4)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우, 집행 담당자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감사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란 합리적인 운영을 독려해야 하며,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생각없이 비합리적인 문구를 따른 시행은 적절치 못합니다. 도대체 앞 뒤, 아래 위가 다 따로 가는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요? 미디어를 통한 변화의 외침의 아닌, 국민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회신** 2014-10-06 [운영지원과]

1. 군산 ↔ 부산 출장 건에 대한 출장비 지급 건 : ‘공무원여비규정’[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924호, 201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 및 주소지인 군산에서 출장지인 부산 출장여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2. 숙박비 지급 기준에 관한 건 : ‘공무원여비규정’[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924호, 2013.12.11., 일부개정] 제16조 1항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숙박시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어 65,000원까지 지급 가능함.
3.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건 : 현실에 맞는 여비지급기준 마련, 직급에 따른 구분,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의 조정, 정부정책과 기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 조정·실천, 집행담당자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 운영 등의 전반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

- 비 규정”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이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선 사항은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02-2100-4478)로 연락 바랍니다.

## 5

##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 사용시

## 질의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 학교는 국립대여서 출장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면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하였을 경우출장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추가 지급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2014-12-04 [운영지원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절약된 운임의 1/2의 범위 내에서 1일당 일비 50%를 추가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적마일리지로 국내 항공권을 구매(20만원 상당)해 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의 경우, 출장일당 일비 1만원씩 추가 지급(10일 출장\*1만원=10만원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공적 마일리지 부족으로 사적마일리지를 공적마일리지와 합산(30%내) 사용한 경우, 사적마일리지 상당 분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적마일리지 21,000마일(70%)과 사적마일리지 9,000마일(30%)을 활용, 50만원상당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여 중국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 추가지급 여비 : 15만원[=50만원\*30%(9,000마일/30,000마일)]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적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점수로 공적마일리지를 1마일당 20원에 구매, 사적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6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산학협력단 적용

질의

[교육부 훈령] 제111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서 제5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중 외부위원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통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부산대학교 교수 및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5-01-23 [운영지원과]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 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OO대학교 직원 여비 지급

질의

OO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1박2일의 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을 아래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민원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OO대학교”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출장지 : 대구 ↔ 강원도 원주 흥업면

소재 OO대학교 (행사장에 7시 30분까지 도착해서 행사개최준비 관계로 전일 출발).  
출장명령일 : 2015.1.7.(21:00)~1.8. 24:00(2일간). 실제 출장시간 : 2015.1.7.(24:00).  
[자정을 전후하여 대구TG 진입 추정, 행사 준비관계로 사무실에서 늦게 출발, 고속도로 영수증에는 출발지 TG 진입시간 미표시 됨, 출장지 고속도로 진입시간 : 2015.1.8.(03:59)  
(출장비 고속도로 TG 영수증 발행시간). 숙박시간 : 04:10(영수증 있음)].  
상기와 같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 2일중 1일의 일비 및 식비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숙박비는 지급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회신** 2015-02-24 [운영지원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에 따라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 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숙박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부 운영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8

### 교육훈련여비 중 일비 지급

**질의**

교육연수원에 근무하면서 공무원훈련 여비 중 일비지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5-05-06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시행 2014.11.19.][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거 근무지 외 교육훈련(비합숙의 경우) 기간 중 버스를 임차하여 현장연수 진행시 일비 지급액은 등록일(2만원)과 수료일(2만원)은 전액을 지급하며, 기타일(1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일비의 5할 지급하여야 함.

## 9 지역별 대학교 졸업자 수(1980~최근)

### 질의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수 어디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제공

**회신** 2015-02-16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수(1980년 이후)’ 자료는 ☎02-3460-0380으로 문의하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 전국 소재 초·중·고 대학교 현황

### 질의

전국 소재 초·중·고 대학교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음(학교명, 전화번호, 주소 요청)

**회신** 2015-03-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교육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관련 보유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대상 학교 명단 및 주소록이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11 초·중등 정보공시제도 개선 요청

### 질의

초·중등 정보공시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공시제도를 폐지하든지, 대폭 개선할 때라고 생각함

**회신** 2015-04-07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접속자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공시항목 수요 분석, 교육통계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공시항목 및 공시차수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 고등기관의 교원관련 허위 공시에 대한 행정조치

**질의**

대학 교원관련 허위 공시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에 대한 안내

**회신** 2015-05-07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대학의 교원현황 등 주요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제 10조에 따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 9 장

기타



## 1

## 국정감사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 작사자 규명 재심의 촉구 요청

## 질의

우리 국가 애국가는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애국가 작사자 未詳’이란 결론을 내린 이후 개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따랐고, 법적 제도상의 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국가의 역사성과 위상 정립이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해방 70년을 맞아 이 문제는 규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애국가의 작사자를 규명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회신

2014-10-15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본 위원회는 애국가 작사자 규명과 관련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의뢰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하여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2014. 4월 의뢰)은 애국가 작사자 관련 논쟁의 경과, 주요 논점, 각 논지의 핵심적인 근거 자료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는 본 위원회 소장 자료 조사 및 검토, 관련 연구 성과 검토, 관련자 인터뷰 및 신규 발굴 자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 고려 시대 ‘공조 전서’의 역할 및 품계 문의

## 질의

족보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편집하고 있는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옛 족보에 고려 우왕 때 ‘공조 전서’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공조’ 부서가 있었는지요? ‘전서’ 관직이 있었는지요?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조 전서의 품계는 무엇인지요?

## 회신

2014-11-06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공조는 산림·소택(沼澤)·공장(工匠)·건축·도요공(陶窯工)·야금(冶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 중앙관청입니다. 전서는 그 관청의 장관으로 품계는 정3품입니다.

3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개설

질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연수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2년에 한번 자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2~3명만 선정되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매년 열리는 것에 비해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언제 열리는지, 자격연수 대상자모두가 연수 받을 수 있는 방법(2년동안 기다려야 하는지)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6-18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현직교원에 한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원이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유치원, 초등)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초등 6학년 참고서 점역 필요

질의

000학교 초등 6학년 000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전맹으로 한소녀와 점자교과서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참고서(우등생전과) 점역을 해서 공부를 하니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참고서를 점역한 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 이해와 습득이 높아,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재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초등6학년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교과과정이 반영된 일반 참고서(우등생전과) 점역 자료가 없어서 공부에 애

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지 시각장애만 있을 뿐 비장애인 아이들과 동일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참고서를 점역한참고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만간 개학을 하기 때문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2015-02-25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문제집 및 참고서 등을 대체자료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시각장애 특수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체자료 제작 희망 도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학생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대체자료는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셔서 개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된 대체자료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이 압사이트(blind.knise.kr)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원 채용 시 의무 근무 기간 및 원소속 기관(시·도교육청) 복귀

#### 질의

공립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현재 교육부 교육연구사 채용시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추후 전출 시 교육부 전입 이전의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 복귀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도 채용 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는 기간은 몇 년이며,
2.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가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2014-11-18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

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는 기간은 없습니다.(전직 제한 기간 없음)
2.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가 원소속기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이 가능합니다, 단 원소속기관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장애인학교 학교기업 공간 확충 협조 요청

질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위치한 한국특수교육원내에 위치한 학교기업은 한국선진학교와 민간기업의 유치로 현재 식품회사(건과류)로서 한국 선진학교 전공과 학생 40여명과 민간기업의 기술이전과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제품 판매로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학교기업입니다. 소외된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창업과 교육으로 지속적인 반복훈련과 자아창출로 앞으로 장애인 학생들의 삶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기회의 사업으로 관계자들도 한마음으로 제품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학교 학생 40여명 전공과 교사 10명 그리고 협력회사 직원 40여명이 1~2층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장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있기에 작업에 필요 설비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작업자나 학생들의 휴식공간의 부족과 각종 편의시설 탈의실 등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3~4층에서는 불과 몇 명의 상주직원뿐으로 3층 정도를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장소의 활용이 많아진다면 향후 안전한 작업공간에서 제품생산과 교육으로 장애인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직업교육과 아울러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좀 더 장소를 제공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재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4-07-08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국립특수교육원 안산청사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특수교육원 안산청사 활용방안(2011.02.14.)」에 의거하여 1~2층은 한국선진학교 학교기업에서 사용하고, 3~4층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설 지원을 위한 총무과 및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2014년에 걸쳐 구청사의 낡은 설비를 보수·보강하였으며 현재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이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1~2층 공간이 부족하다면, 한국선진학교 학교기업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유휴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안산청사가 전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아울러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교사지원, 현장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

##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개명 절차에 대하여

### 질의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개명 전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름을 개명하여 홈페이지의 이름도 바꾸고 싶습니다.

### 회신

2014-08-25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개명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기술지원센터에서 개명정보를 유선 상 확인 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명 처리 지원 해드립니다.

## 8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 교육 접속 오류 건

### 질의

중앙교육연수원 로그인 할 때, JAVA 가 업데이트 안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JAVA 업데이트를 하니, 업무용 사이트 로그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 교육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회신

2014-09-11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는 인증서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JAVA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바 업데이트 후 업무 사이트 접속 오류가 있을 경우 JAVA프로그램 구 버전인 6버전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자바 업데이트 중지 방법 :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 사이트 에서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추가하여 자바 구버전으로 연수원 로그인 가능합니다.) 기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

중앙교육연수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절차

질의

중앙교육연수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등록 안되어 있다고 하고 등록된 아이디거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를 찾고자 합니다.

회신

2014-09-25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중앙교육연수원 아이디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시·도 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조회는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조회를 하시거나 중앙교육연수원에 등록된 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에서 인증서 등록을 해놓으셔야 추후에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시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이상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 방안

질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듣고 싶은데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서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더니 비밀번호를 가입당시 등록했던 핸드폰번호로 전송을 해주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 그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4-11-03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기술로 암호화 되어 있어 관리자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11 중앙교육연수원 신청 모바일 연수 신청에 대하여

### 질의

원격연수를 신청하면서 모바일연수가 가능한 연수를 신청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용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지만 아이폰용 어플은 주소를 누르면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고 뜨고, QR코드를 인식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회신 2014-11-05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은 안드로이드폰의 Play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통합교육연수 어플 검색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사용하시는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앱을 이용하여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www.neti.go.kr)에 접속하신 후 초기 화면의 APP다운 메뉴에서 아이폰용 다운로드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됩니다. 어플 설치 후 최초 실행했을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APP개발자” 라는 경고창이 뜰 경우 아이폰 설정 (일반 > 프로파일 > UPACOM Co.,Ltd.) 를 신뢰할 선택하시고 재실행 하시면 됩니다.] 기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2 중앙교육연수원 비밀번호 초기화

### 질의

제 아이디로 계속 검색해도 로그인이 안됩니다. 비밀번호를 임시로 하나주시면 안될까요?

### 회신 2014-12-10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홈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찾기 하시면 미리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 휴대전화로 임시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문자로 받으신 대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후 비밀번호 꼭! 변경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개인정보 수정에서 인증서를 등록해놓으시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통합기술지원센터 ☎053-980-3800(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3 2013 EPIK 8월 사전연수 조교 활동 증명서 발급

### 질의

작년 2013 EPIK 8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동을 한 OO대학교 생명과학공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전 과정을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강도 높은 지원 업무로 보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수하지 못했지만, 제가 봉사했던 약 3주간의 봉사 기간에 대한 활동, 내지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회신** 2014-07-03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육지원부]

2013년 8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에 운영진 조교로 참여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기간(12일)을 근무하지 않으셨기에, 조교활동 완료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활동 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다면 이메일(OOOO@mo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신청 시, 증명서를 수신하실 우편 주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4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 선발시 내신성적 산출

### 질의

2015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에 관한 질의입니다.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에 관하여

1. 성적산출이 가능한 모든과목의 평균내신등급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성적산출이 가능한 모든과목이란 어떤 과목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즉, 음악/미술/체육 과목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년부터 저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대부분의 과목은 A~E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으나, 음악/미술/체육 과목에 한해서 ABC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평균내신등급의 급간을 조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고 적혀있으나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4-07-08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1.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은 내신 9등급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신성적 산출 과목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A~E등급 적용은 이미 안내한 대로 A→1등급, B→3등급, C→5등급, D→7등급, E→9등급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평균 내신등급의 급간을 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15 국비지원 유학 일정

**질의**

국비지원 유학을 가고 싶은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미국 국비지원 유학 일정이 앞으로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언제 나오는지(날짜, 신청방법 등 공지사항이) 너무 궁금합니다.

**회신** 2014-07-09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국비유학은 국내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내년도에는 3월말 경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의 공고(2014.3.31,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살펴보고 지원 준비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16 사우디 아라비아 유학생 한국어능력 시험 문제

**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 A 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학부 수업을 다 듣고 학점을 채운 지 1년 됐습니다. 그러나 졸업 조건인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따지 못 함으로 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2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험 때 1점만 부족해서 3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한테 점수에 대해서 확인 해 달라는 의의신청 보냈지만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

라비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없어서 여기서 계속 비자 연장하면서 있었으나 9월에 비자 만료 기간이라서 더 이상 시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민원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2014-08-08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34회 성적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A씨의 답안지를 재검토하였으며 성적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재검토후 OOOO@gmail.com로 재검토 결과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6회 TOPIK 시행국가가 아니므로 아랍에미리트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처는 자이드대학교 세종학당이며 연락처는 ☎971-556832559입니다.

## 17 외국인장학금 제도

**질의**

국립국제교육원에 대한 외국인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해에 신청하여 내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작년에 한국에 왔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학교육으로 대학교를 나왔고 이번 해에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원에 apply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교육대학원에서는 외국인 장학금을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공지사항과 여러 글을 보았을 때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교포에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대학원 희망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나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4-08-19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KGSP) 사업의 목적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학부장학생은 매년 60~70개국 약 110명, 대학원장학생은 매년 110~140개국 약300~700여명(<http://www.studyinkorea.go.kr>참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 및 진학가능학교는 매년 KGSP 수학대학 내 지

정된 학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studyinkorea.go.kr>참고)를 참고하세요. 지금 민원인에게는 지원자격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추천대상국 국적 소유자(본인 및 부모) :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어야 함. (㉡) 학부는 만 25세 미만인자, 대학원은 만 40세 미만 인자. (㉢)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학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원은 학부 및 석사 졸업자 : 이전 학위 과정 전학년 누계평점 평균(C.G.P.A)80점/100점 이상이거나 성적상위 20%이내인 자(대학원), C.G.P.A가 2.64/4.0, 2.80/4.3, 2.91/4.5, 3.23/5.0이상이어야 함(대학원). (㉤) 한국에서 동일 과정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자(교환학생 경험자는 지원 가능).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우수자 우대, 이공계열 우대장학금 지급기간은 한국어연수기간 1년, 학위과정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입니다. 장학금 지원내용은 항공권, 생활비(학부 매월 80만원 대학원 매월 90만원, 학비, 정착지원금(20만원), 귀국준비금(10만원), 어학연수비, 의료보험 등을 제공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여부는 웹사이트에서 입학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다릅니다.

## 18

##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으로 피해 사례

## 질의

올해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에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러시아정부초청장학생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행정 처리가 워낙 늦어서 그런지, 반년 가량을 하염없이 결과를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8월달에는 이미 제 동기를 비롯해 2명이 합격 통보를 받아 러시아로 출국했고, 9월달에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합격 발표가 나 중순경에 전부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는 대사관과 국립국제교육원에 문의를 해보니 러시아 측에서 아직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고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뿐이더군요. 그리고는 9월 24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즈음에 합격 공문이 왔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니다. 그래도 일단 공문만 온 것이지 초청장이 왔다는 뜻은 아니기에, 초청장이 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서 대략 한달 뒤로 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데 오늘 모스크바에 있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30일까지는 학교에 등록을 해야만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회신** 2014-10-06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지난 2013년에는 8월 21일 전체 합격자 명단을 보내고 9월 15일까지 입국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당시에는 약 20여 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대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유학생 전원이 극동대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학별로 합격통지를 보내면서 불과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대학 등록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입국날짜가 촉박하다 질의를 하였더니 유학생이 도착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면 러시아 교육부와 협의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도 합격 통보가 나온 8명의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입학 취소를 하고 다른 유학생들은 주어진 일주일 시간 내에 잘 도착하여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도착 일자내 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더라면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번 입국 등록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러시아 교육부 유학 담당부서의 개편으로 인하여 행정 업무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하게 유학생생활을 하셔서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19 GKS 해외입양아 지원자격

### 질의

프랑스 입양아입니다. 해외입양아로서 GKS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수 외국인과 해외입양아의 GKS 지원 자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0년에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을 찾은 후에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다가 2010년에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서 더 공부를 하기 위해 장학금을 알아보다가 GKS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친부모님을 찾고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해외입양아가 순수 외국인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 해외입양아 전형이 뭐가 따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신** 2014-10-02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D-2 경험자 자격제한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경쟁률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학으로 인한 학위 소지자 및 일반 유학경험자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GKS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는 이러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경쟁률의 증대 및 장학생 선발 결과, 교환학생 출신 장학생 수 절대적 (50% 이상)인 현상과 GKS 우수교환 사업을 동일사업으로 지적 받는 등을 근거로, 2013년도 GKS 위원회에서 교환학생 유경험자도 일반 학위 과정(근거: 비자 D-2)으로 포함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주장대로 해외 입양아 전형을 만들었다면 일반 외국인 전형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2015년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을 정할 때, 민원인의 주장을 GKS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개정된 모집요강을 추후 [www.studyinkorea.go.kr](http://www.studyinkorea.go.kr) → GKS → Notice 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동시에 다른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수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질의**

한국에서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는 제한되는지요? 아니면 응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학원 등에서의 수강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지요?

**회신** 2014-10-23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1.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응시 제한 여부 : 시험 접수 단계에서는 시험 지원자의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시험을 접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자는 TOPIK 신분증 규정(첨부 파일 참고)에 의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학원 수강 가능 여부 : 학원 수강에 관련한 문의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 TOPIK 시험 등록 및 응시료 결제방법 개선 요청

### 질의

OO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많아 한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Lab에도 많은 수의 외국학생이 장학금 등의 이유로 TOPIK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의 캐나다 출신 유학생이 저에게 TOPIK 등록과 응시료 지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처음으로 TOPIK homepage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함께 등록을 해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도 없었고, 한국인인 제가 너무 무안했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언급해보겠습니다.

1. 한국어 검정 능력 사이트에서 외국어 지원이 너무 부실하다. 몇 개의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단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어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가장 기본은 사용자 성향 및 요구 분석입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서 시험보려는 외국인한테는 부적절한 홈페이지입니다.
2. 결제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이걸 최근 뉴스에서도 나온 우리나라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credit card가 없고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혹은 가상계좌를 통한 결제를 하지만, 어려운 금융용어가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어, 금전거래에 실수를 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속 중에 대기화면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아 processing중인지 여부도 확인이 안됩니다.
3. 홈페이지의 help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지원기능이 있지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SW관련 직접 개발과 PL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홈페이지 제작 Project는 절대로 Qualification을 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욕과 함께 welcome to Korea 라는 비아냥이 나오도록 하는 홈페이

지가 “go.kr”라는 도메인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작은 개선 하나가 우리나라에 대한 감성평가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4-10-20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1. 홈페이지 외국어 지원 관련 :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는 영어와, 응시자의 국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험에 관한 기본정보 등은 해당 외국어로 대부분 번역돼 있습니다만,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금융용어를 비롯한 모든 용어나 공지사항 등을 대상으로 주요 언어로 번역 등재함으로써, 시험접수 및 결재과정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응시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결제 방법 관련 : 현재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Active X를 제거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 본 홈페이지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제에서 제공되는 페이지는 본원에서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결제 PG사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HELP 기능 관련 : 수험생의 시험접수과정 등에 발생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원격지원” 기능을 도입하여 담당자가 응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고객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향후 그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어능력시험 및 시행에 관해 개선해야 할 점이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2

###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의 네트워크 개선 촉구

#### 질의

토픽 시험을 위해, 무료가 아닌 이상, 각 응시자에게서 수 만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고, 각 시험마다, 응시자 수에 따른 엄청난 응시료뿐만 아니라 회차까지 더 늘었습니다. 매번 응시가 마감되어서 응시를 못할 정도인데, 그로 인해 토픽 시험응시로 인한 수입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에 따르는 네트워크 수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전세계인의 눈에 돈벌이로만 치부되지 않을까요?

**회신** 2014-11-17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1. 네트워크 개선 :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험 응시료 수입금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출제, 인쇄, 시행, 채점 등 여러 항목에 나누어 집행되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산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금년 하드웨어 면에서 서버 증설 및 보안을 위한 WAS 서버 이중화, 데이터의 빠른 처리를 위한 SAN 스토리지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했으며,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DB 튜닝 3회, 홈페이지 재구축 등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산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의 비중을 높여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시험 접수 및 성적 확인 : 모바일 페이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모바일에서의 개인 정보를 사용한 조회 및 접수는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3 국비유학 조건에 대하여

**질의**

국비 유학을 알아보다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00대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연기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국비 유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예술학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예술 대학으로의 국비 유학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4-11-24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국내대학 4년 과정 졸업자가 기본 지원 자격이며 그 외의 자격은 공고문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으로는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심사에서 선발되어 예술대학(영국왕립예술학교 등)으로 유학도 가능하니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 24

## 문부성 교원연수생 파견 조건 개선

## 질의

문부성 교원연수생 선발 조건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자(1978.4.2 이후 출생자) (2) 국·공·사립 초·중등교원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교직 실경력 소지자 (4.1 현재) (3) 과거에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본인은 1982년 5월 4일생으로 만 32세, 실교육경력이 현재 2년 2개월입니다. 군경력 2년 3개월 8일을 더하여 계산하면 4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4개월여간의 기간제 경력을 더할 경우 경력은 4년 9개월로 늘어납니다. 만 35세가 되는 2017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의 교직 실경력은 4년 반 정도가 되어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로 2년 3개월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제 실 경력은 저때 이미 6년이 넘어 지원 가능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의무인 군복무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고 경력을 쌓아온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병역필자가 이런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희망합니다.

## 회신

2014-11-17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교직에서 봉직하시는 남자 교원분들이 일본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일본문부성초청 교원연수생의 연령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본문부성초청 교원연수생에 대한 연령 제한은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정한 제한 사항으로서, 2014년도 선발 기준은 잘 아시는대로,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자(1979.4.2 이후 출생자) (2) 국·공·사립 초·중등교원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교직 실경력 소지자 (4.1 현재)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본 정부에서 정하여 타 국가와 동일하게 시행하므로 조정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에서는 연구 과정 유학생 만 35세 미만, 외국인 학자 초청 프로그램도 학위를 받은 후 6년 이내의 외국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원 모집 시 동일한 민원이 들어와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본대사관과 협의하였으나 조정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25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 질의

2011년 00대 국제대학원 졸업 후 철강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박사과정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모집요강 중 직전학교졸업 3년이내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졸업한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직장생활도 경력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조항에 나온 그대로 졸업한지 3년이상 경과되어 지원 자격이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하게 되면 학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회신** 2014-11-24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000님께서 졸업하신지 4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박사과정의 경우 동종분야의 경력을 인정하여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유학생 모집은 미달이므로 만일 금년에도 지원자가 부족하면 지원자 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모집에 지원하시기 바라며 러시아에 유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26 토픽시험 텍스트 제공 여부 문의

### 질의

00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토픽2의 쓰기부분을 분석하는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험을 본 학생들의 텍스트 10개를 저한테 보낼 수 있을까요?

**회신** 2014-12-02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응시 답안지 10매 요청 : 응시생의 답안지를 요청하시려면 토픽 홈페이지([www.topik.go.kr](http://www.topik.go.kr))/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서 정보 공개 신청서를 다운받아 FAX 02-741-7408 혹은 [topik@moe.go.kr](mailto:topik@moe.go.kr)로 보내셔야 합니다. 신청 정보란 작성 시 몇 회, 몇 번

문항, 몇 매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편의를 위해 정보 공개 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드립니다. 이후로도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7 2015 헝가리 국립대 초청 장학생

### 질의

선발절차에 첨부파일의 웹사이트로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 연결이 안됩니다.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en.uni-nke.hu/study/good-govern-ance-scholarship/apply-now>

### 회신 2014-12-29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2015 헝가리 국립대 초청 장학생’ 모집 사항 중 웹 사이트 연결은 한국에서 구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uni-nke.hu/→English→scholarship> 헝가리정부초청 장학금에 관해서는 [www.scholarship.hu/](http://www.scholarship.h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한 헝가리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8 국외유학인정서 서류 발급 요청

### 질의

2014년도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자녀 2명의 국외유학 인정서류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 회신 2015-01-16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유학인정서 발급 요청을 하셨는데 해당 학생의 유학인정 내역이 없습니다. 인정서를 받으시려면 일단 의무교육 기간 중의 학생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에 제출하시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여 인정서를 드립니다. 그 이후 유학을 나가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학이 되는 것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내가 자세히 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후 적격자인 경우 인정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9 자녀의 일본유학 학자금후원

### 질의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동경 소재 일본 내 14위의 명문사립대인 소카대학교 문학부인 인간학과에 입학 조건부 별과과정에 합격하여 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당장 이번 달 말까지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천만원가량의 돈과 5년 동안의 유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는 입학만 시켜주면 알바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해나겠다고 하며 하루하루 돈이 마련되기만을 비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저기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국내만 되고 국외는 안되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집이나 부동산등 재산권이 전혀 없고 아빠가 저신용에 4대보험이 안되는 영업직 사원이라 대출이 안되어 이래저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 회신 2015-01-21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우리 대한민국은 국비유학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대학 4년 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시험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아직 합격만 한 상태라면 2015년도 3월 중 공고하는 국비유학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이 되면 가을 학기부터 장학금으로 수학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1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하는 단계는 있지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2014년 3월 31일자 공지사항에서 작년도 공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2015년도 선발시험에 지원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 30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 질의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8월 졸업예정자라서요. 중국 대학원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도 공증만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신청할 때는 불가능하나요? 졸업예정자 공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5-03-06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사업은 한중 교류협정에 의거 중국 정부 초청 장학생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은 중국 정부에서 추천하기로 약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국대학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000님의 경우 다음 해 선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경쟁률은 매년 지원하는 인원 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치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31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터키

### 질의

터키로 정부 초청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000입니다. PDF파일로 받은 자료에서 터키공고는 5월이라고 나오는데 5번째 파일에서는 3.31이 온라인 마감이라고 나오니다. 올려주신 터키사이트에도 아직 apply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회신** 2015-03-02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터키정부초청장학생'은 모집 분야에 따라 학사 5월, 석박사 3월, 어학연수 6월. 기타 리서치 과정 모집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학 희망분야에 따라 본원의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사이트 안내 : 지원 사이트 <http://www.turkiyeburslari.org>  
<http://www.trscholarships.org>→영어,선택→Türkiye Scholarships Postgraduate Programme Applications for 2014→click on line application form→계좌 생성→로그 인→지원서 및 서류 등록→마침. 참고로 아래 사이트에서 시기별로 터키 정부초청장학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홈 페이지 주소 접속 [www.niied.go.kr](http://www.niied.go.kr)→정보공개→공지사항→외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공고 현재 터키 측에서 모집 홍보에 관한 내용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32 일본 문부성 연구 장학생

### 질의

문부성 장학생으로 일본 로스쿨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전형 설명을 열람한 결과 최종 합격 후에 8월 31일까지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일본 로스쿨 입학전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8월 초에 LEET와 같은 시험을 보면서 시작되는데 이는 최종합격이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부성 초청장학생은 합격후에 일본 대학교에 연락하여,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입학 허가를 받는 것 인가요?
2. 신청 전형에는 일본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예비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충분치 않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또 최종합격 후 내년 4월부터 예비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최종합격 그해 10월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5-06-09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일본 정부 문부성 연구장학생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을 주한일본대사관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알아본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로스쿨의 경우 일본 정부 장학생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에 불합격되면 장학생 합격도 취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학생 지원과 로스쿨 지원을 병행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 지원의 경우 1차 면접이 끝난 후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스쿨의 경우 연구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비과정이 없으나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 연락해서 예비과정이 있는지와 시기를 문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 33 국비유학생 지원 신청 절차

#### 질의

올 해 가을학기에 미국의 우수대학 (U.C Berkeley)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국비유학생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현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000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7월중에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만약 1차 서류 합격을 한다하더라도, 국내에서 시행되는 면접전형 불참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서류가 통과되더라도, 만약 국내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면접을 못 보게 되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 할 수 있게 되나요?

**회신** 2015-06-10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1차 서류에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층면접에 참석하여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안되시냐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화상 면접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비유학 카페에 문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4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

#### 질의

인천에 거주하는 26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 라는 곳의 재즈피아노로 유학을 준비하는데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샤르콧마리투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이 어렸을 때는 진행이 느려서 문제가 없었다가 20살 때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매순간 통증 레벨 6이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현역에서 면제가 되고 모든 학업도 중단됐습니다. 대학(중퇴) 그렇지만 다시 인내하면서 준비 중입니다. 여러가지 주위에 도움도 받고 유학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1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5년째 약을 드셔야 잠이 드시는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형이 한 명있습니다.

**회신** 2015-06-22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외국 정부에서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선발 권한은 외국 정부에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사관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은 네덜란드교육진흥원(www.nesokorea.org, 02-735-7673, info@nesokorea.org)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교육진흥원에 귀하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니 예술계 쪽 장학금 프로그램은 많지 않지만 <https://www.studyinholland.nl/scholarships/grantfinder> 로 접속해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은 네덜란드교육진흥원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 35 국립국제교육원 기능기술인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개선 검토 요청

**질의**

2015년 6월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 중인기능기술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본 선발의 목적이 국내 기능기술인의 능력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원자격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만을 국한하고 있으므로 당초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비학위 및 비학력기관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기능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들에게도 국가가 장려하는 국비유학지원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에게 응시기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회균등, 평등원칙에 벗어난 것이라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5-07-01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선발의 목적은 국내 기능기술인의 능력 향상을 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계고 졸업자가 아닌 특성화고(공업고, 실업계고, 구 전문계고 포함) 졸업자로 중소기업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선취업후진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비학위 및 비학력기관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기능인들도 매우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들에게도 국가가

장려하는 국비유학지원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의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제도가 확대되어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상황이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니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이러한 기관에서 훈련받은 경우가 있다면 특히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기회균등, 평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6

## 독일 유학하려면 어떤 학교 입학해야 하며, 국가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사립일반고교에 재학 중인 고2학생입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독일에 자동차공업에 대해 배우러가려고 합니다. 일년이나 이년정도 학년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느 학교에 입학하여야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의 지원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이런 곳에만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신 2015-06-22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독일에 자동차공업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떤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독일에는 파혹슐레라는 이공계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며 독일 유학을 위해서는 독일어 학습이 매우 중요하오니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독일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어 능력을 키운 후 현지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박사과정생, 대졸자, 예술 및 건축분야 전공자, 독일대학 여름방학강좌 참가자, 우수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AAD 서울사무소(☎02-2234-0655, info@daad.or.kr, www.daad.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내 학생의 국외 유학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에는 국비유학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상이 석·박사과정 지원자입니다.

**37** 재외국민자녀 한국교과서 배부 날짜(개학일)에는 받을 수 있게 통관협조 요청

**질의**

한국에서 중국 청도로 이사 온 지 3년째 되는 두 학생의 엄마입니다. 중국 학교를 보내다가 이번 3월에 한국학교로 전학을 시켰는데, 어제까지 교과서 배부가 안돼서 오늘 행정실 문의를 해보니 상해 쪽에서 통관을 거친 교과서가 오늘에서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프린트물로 수업은 진행했으나,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부끄럽더라고요. 중국학교랑 비교되는거 같아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라는 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자녀들을 위한 교과서배부일도 앞당겨주시고, 통관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5-03-05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우리원에서는 재외동포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 세계 재외교육기관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학교에는 학기 시작에 맞추어 교과서를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매년 춘절기간 세관휴무(약 7일)로 통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특히 2013~2015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 교과서가 차례로 개정되면서 교과서 출판일정이 지연되어 학기 시작일까지 교과서 배송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년(2016학년도)에는 개정 도서가 없으므로 교과서를 좀 더 일찍 발송하고, 관련기관(외교부, 상하이총영사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관지연 없이 필요도서가 학기 시작일 전 도착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 교육부장관님께(국제결혼이민자 한국어 토픽시험 합격 증명발급 지연)

**질의**

지난 해부터 국제결혼 이민자는 한국어토픽시험에 합격해야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어 외국 신부들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여 한국어토픽시험에 합격하고도

합격증을 발급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외국 신부들이 꿈에 그리던 남편의 나라 입국을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전자민원시대에 이런 느장 행정은 말이 됩니까? 지난 3월 22일 시행한 한국 어토픽 시험에 합격한 외국신부들이 합격증명을 받기 위해 2~3개월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최대한 서비스해야 할 것입니다.

**회신** 2015-05-15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합격증 발급에 2~3개월이 걸린다는 ‘느장 행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픽시험의 합격증은 합격자 발표날부터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수령하실 경우라도 국내의 경우 2~3일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 중 ‘합격하고도 합격증을 발급받는데 2~3개월이 소요’ 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픽시험 날로부터 합격자발표 날까지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토픽은 아주 긴 문장의 에세이형식인 ‘쓰기’ 영역의 시험이 있고 그 답안의 채점은 한국에서만 전문채점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토픽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모든 답안지는 한국으로 회수되므로 전 세계의 답안지 회수기간이 최소한 2주가 걸립니다.(이미지채점시스템 상 답안지가 전부 회수되어야만 채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쓰기’영역의 채점은 자동채점시스템인 객관식문항과는 달리 전문채점위원들이 일일이 보고 읽으며 3차에 걸쳐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외시험인 경우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더구나 모든 답안지를 모아 분류하고 선별하는 작업 및 채점이 끝난 다음에도 처리하여야 할 전산작업이 있으므로, 성적발표하기까지 현재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3월 22일 시행의 경우 5월 6일 성적발표 및 성적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저희 부에서도 이렇게 약 45일정도의 성적발표를 위한 소요시간을 채점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여 약 30일(국내)~40일(국외)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성적발표를 위한 소요시간이 올해에 비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

질의

엣그제까지도 에픽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마감일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해석하면 지원자수가 예전 이때에 비해 많지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마감일도 빨리 결정되고 그렇지 않을시 더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에. 지원자수가 실질적으로 지난 상반기보다 더 많았는지 더 적었는지 그리고 포지션 수는 지난번보다 더 줄었는지 아님 비슷한지 이 두 가지는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만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인터뷰를 거쳤던 사람인데 지난 인터뷰에 탈락한 그자체가 탈락 사유는 설마 아니겠지요? 인터뷰나 글은 얼마든 개선하거나 더 업데이트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기에 지난번 탈락과 이번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사정 내지 포지션 수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지난번보다 심화된 것인지 완화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인지 이런 사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한 가지 더 : 혹시 국내 거주자에게 우선권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 사실인가요?

**회신** 2015-06-0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2015년 하반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에 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1) 지원자수가 지난 상반기보다 늘었는가에 관한 답변입니다. EPIK은 직접지원자, MOU체결기관을 통한 지원자, 그리고 모집협력업체를 통한 지원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PIK은 매학기 마다 일정한 경쟁률을 확보하여 경쟁을 통한 훌륭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정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쟁률 확보를 위해 매학기 거의 비슷한 지원자 풀(pool)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원자 추천통로가 몇 개인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쟁률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어민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매학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숫자가 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신규로 모집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숫자는 2014년 하반기 모집과 비슷한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에 배치한 원어민의 숫자보다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규모집 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지원자 숫자도 일정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집하는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류심사가 예전과 달리 왜 3주가 소요된 것인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배치해야 할 지원자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EPIK을 전담할 인력이 감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향후 서류검증과 인터뷰 진행 및 이에 대한 결과가 3주정도 걸린다는 영문 메시지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고 계셨으

리라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께서는 4월 29일에 지원하셨으며, 29일 당일에 안내메일을 보내드렸고, 민원인께서는 그 메일을 바로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EPIK의 방침에 따라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5월 22일에 합격여부를 알려드렸으므로 미리 안내해드렸던 3주의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4) 국내거주자에게 우선권이나 특혜를 주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매 학기에 추천받은 지원자는 거주지,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EPIK의 정책에 따라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내의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전화 평판조회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지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며,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서류심사단계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거주지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혜는 있을 수 없으며 서류심사나 인터뷰에서 탈락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 모집협력업체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관한 EPIK의 답변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요 증가로 2015년 하반기에도 EPIK 모집협력업체를 활용하여 지원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만든사람들

---

---

총 괄	감 사 관	김 청 현
	민원조사담당관	이 병 석
기획 및 편집	사 무 관	김 재 영
	교 육 연 구 사	강 경 탁
	주 무 관	이 우 정
	주 무 관	박 재 향
	주 무 관	현 지 선

---

---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

인 쇄 일 : 2015년 12월

발 행 일 : 2015년 12월

발 행 처 : 교육부 감사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우 30119)

전화 : 044-203-6107

인 쇄 처 : 미래인쇄

전화 : 044-866-6331

---

---

본 책자는 PDF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민원신청⇒질의회신사례집)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

(☎ 044-203-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